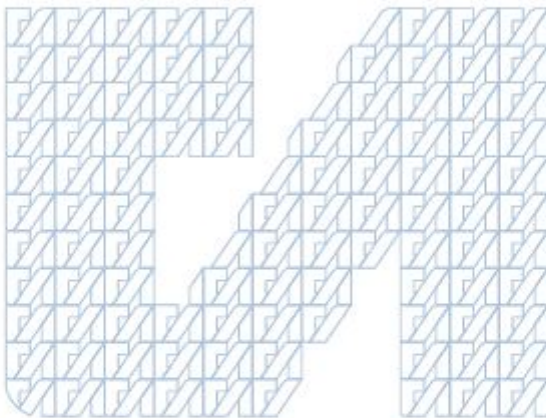


지방소비세의 세입효과 및 지역별 안분체계 연구

A Study on the Revenue Effect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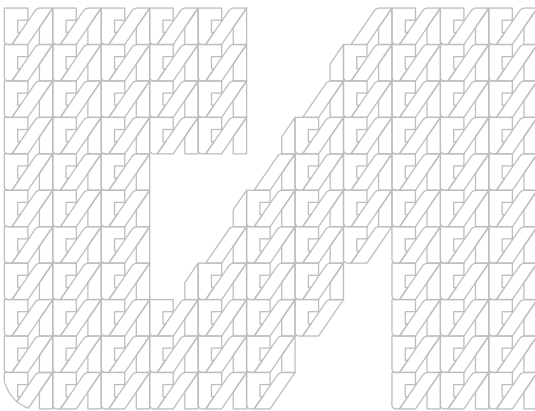
김흥주 · 이현국



지방소비세의 세입효과 및 지역별 안분체계 연구

A Study on the Revenue Effect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System

김흥주 · 이현국



연구책임	• 김흥주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현국 / 대전대학교 조교수
연구지원	• 이지혜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 박서윤 / 세종연구실 조사원

정책연구 2018-26

지방소비세의 세입효과 및 지역별 안분체계 연구

발행인 박재욱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부가가치세의 11% → 21%)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와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안분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재원규모의 확대(세율인상)와 더불어 합리적인 세수배분 방식의 논의가 대두되어 보다 적합한 안분체계의 연구가 필요함
 - 세종시에 보다 적합한 안분체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대안 도출

■ 연구목적 및 내용

-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세수증액 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둘째, 국세·지방세 조정에 따른 세입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증액된 재원규모의 확대에 대응하여 세종시의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즉, 지방소비세 인상 시 현행 가중치 및 배분기준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에 관한 이론적 배경 검토, 현황 및 실태조사, 지역별 세수효과 및 안분기준 도출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연구함

■ 연구 방법

- 지방소비세에 관한 이론적 배경 검토,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조사와 주요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 지방재정자료에 근거 재정확충 및 형평화 효과 분석
-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 실시

■ 연구결과

-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현 부가가치세 11%에서 21%로 확대) 논의에 따라 현행 배분기준과 가중치 적용에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세수의 확충과 형평화 효과가 적절하게 고려된 합리적인 안분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 세종시 차원에서 세수의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재원규모의 확대에 대응해 세종시의 재정계획의 반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이를 위해 학계 및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제기된 5가지 배분기준(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규모)과 4가지 측면의 가중치 적용방식(가중치 배제, 현행 가중치 적용,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소비지수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에 근거하여 각각의 배분기준과 가중치 적용방식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도별 실제세입규모 도출 산식(세입확충)

시·도별 실제세입규모 = 배분기준 액수 비율(예,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의 시·도별 비율)에 근거한 소비세 규모 - 수도권 지역 상생발전기금(서울, 경기, 인천의 출연금 35%) + 출연된 지역상생발전기금 광역시·도에 안분(수도권 제외)

※ 시·도별 재정격차 분석 도출 산식(재정 형평성: 지니계수 중심)

$$Gini(\text{지니계수})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이 중 n 은 17개 시·도 총 수, Y_i 는 특정 광역자치단체, i 의 수요자대비 시·도별 예산액을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한 평균 예산액은 μ 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 가중치 배제 안분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에 대하여 가중치가 배제되었을 때 안분세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각각의 배분 지표상 지역별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세수 집중, 지역 간 형평성에 근거할 때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을 고려함
 - 세종시 차원에서 인구규모를 근거로 배분할 때, 세입증가 효과 역시 우수함

□ 제언: 가중치 배제 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배분기준 도출 고려

[15%분 지방소비세 가중치 배제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16.37	16.19	19.15	13.03	15.91
부산	7.49	6.72	7.13	7.39	6.35
대구	6.44	6.45	5.93	6.44	5.48
인천	3.71	3.75	3.67	4.10	4.52
광주	5.17	4.72	4.96	4.94	4.50
대전	4.58	4.25	4.24	4.35	3.67
울산	3.72	3.54	3.50	3.56	3.80
세종	0.51	0.48	0.41	0.63	0.74
경기	16.31	16.66	15.08	16.85	17.85
강원	4.19	4.55	4.52	4.41	4.45
충북	4.1	4.32	4.09	4.34	4.06
충남	4.75	4.94	4.52	4.85	4.93
전북	4.01	4.01	3.85	4.38	3.47
전남	4.47	4.22	4.35	4.99	4.62
경북	6.01	6.08	5.72	6.52	6.38
경남	6.93	6.74	6.41	7.42	6.98
제주	1.63	2.37	2.48	1.79	2.25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335	0.326	0.339	0.312	0.333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 현행 가중치 적용 안분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에 따라 현행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세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역시 배분지표별 분포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경남, 경북, 울산, 대구, 부산 등 경상권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세수가 역전된 현상이 나타남
- 지역 간 세수가 역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세수 배분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는 현행 안분체계 방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제언: 현행 가중치가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서 현행 방식인 민간최종 소비지출에 근거한 배분기준의 지속적인 활용

[15%분 지방소비세 현행 가중치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9.40	9.23	11.15	7.19	9.22
부산	8.19	7.25	7.86	7.77	6.91
대구	6.38	6.34	5.83	6.19	5.27
인천	2.13	2.14	2.14	2.26	2.62
광주	4.64	4.08	4.40	4.28	3.83
대전	4.38	3.96	4.00	4.00	3.31
울산	3.47	3.23	3.23	3.20	3.55
세종	0.76	0.71	0.59	0.95	1.17
경기	9.36	9.50	8.79	9.29	10.35
강원	5.48	6.06	6.05	5.73	5.89
충북	5.50	5.85	5.51	5.79	5.42
충남	6.55	7.53	6.90	7.18	7.58
전북	5.91	5.88	5.69	6.37	5.00
전남	6.08	5.59	5.87	6.79	6.30
경북	8.74	8.79	8.27	9.33	9.37
경남	10.85	10.44	10.04	11.29	10.97
제주	2.17	3.42	3.66	2.39	3.24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264	0.256	0.259	0.260	0.268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을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안분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을 재정력에 근거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 결과, 경상권에 세수가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 역시 높게 나타남

- 특히,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포함되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수도권 가중치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려움 상황을 반영
- 아울러 세종시의 경우 세입확충에 장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특수성에 기인,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

□ 제언: 재정력에 근거한 전국 시·도별 가중치(제시된 안은 수도권 100 적용), 세종시는 특수성 고려한 가중치 적용

[15%분 지방소비세 재정력 가중치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10.02	9.91	11.95	7.73	9.92
부산	6.66	5.95	6.44	6.37	5.69
대구	6.8	6.80	6.25	6.65	5.67
인천	2.27	2.30	2.29	2.43	2.82
광주	4.94	4.38	4.72	4.61	4.12
대전	4.66	4.25	4.29	4.3	3.56
울산	2.99	2.82	2.82	2.78	3.10
세종	0.43	0.41	0.35	0.54	0.66
경기	9.99	10.20	9.42	10	11.13
강원	5.84	6.50	6.49	6.17	6.33
충북	5.03	5.37	5.06	5.31	5.00
충남	6.51	6.82	6.25	6.51	6.88
전북	6.31	6.31	6.10	6.85	5.37
전남	6.48	6.00	6.29	7.31	6.77
경북	9.32	9.43	8.87	10.03	10.07
경남	9.74	9.43	9.07	10.21	9.94
제주	1.99	3.42	3.33	2.19	2.96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267	0.283	0.264	0.264	0.276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을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안 분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의 증가분을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해서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른 안분세액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무엇보다 지역 간 재정 불평등도가 다른 가중치 적용에 비교해 가장 낮아 지역 간 재정 형평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세종시의 세입확충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며, 인천 시의 경우 수도권 가중치,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사료됨
- 무엇보다 특히, 충청권(충북, 대전)의 세수입 규모와 비중이 현행 가중치 적용과 비교해 커졌기 때문에 충청권의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 판단

□ 제언: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로 가져갈 시 세종시의 세수입확충 효과가 매우 크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매우 우수, 그리고 차선으로 민간최종 소비지출액, 자체세입규모를 제언할 수 있음

[15%분 지방소비세 소비지수 규모 가중치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10.09	9.99	12.00	7.87	10.04
부산	6.71	6.00	6.48	6.48	5.76
대구	6.89	6.89	6.31	6.77	5.73
인천	3.30	3.35	3.32	3.59	4.14
광주	6.81	5.97	6.42	6.39	5.5
대전	5.66	5.15	5.16	5.24	4.25
울산	5.18	4.84	4.78	4.86	5.34
세종	0.81	0.77	0.64	1.04	1.28
경기	10.06	10.28	9.46	10.18	11.27
강원	5.91	6.58	6.55	6.27	6.41
충북	5.94	6.35	5.96	6.33	5.89
충남	6.56	6.88	6.29	6.63	6.97
전북	5.39	5.40	5.21	5.89	4.63
전남	5.61	5.22	5.45	6.33	5.87
경북	6.58	6.66	6.27	7.07	7.11
경남	6.13	5.96	5.73	6.45	6.29
제주	2.34	3.71	3.95	2.61	3.52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198	0.193	0.198	0.174	0.198

■ 정책건의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배분기준, 가중치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를 선정해서 심층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분기준 및 가중치 부여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함

- 다음은 시·도별 지방소비세 주요 안분체계 도출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가중치		배분기준
소비지수 규모	1안	인구규모
가중치 배제	2안	인구규모
현행 가중치	3안	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방식)
현행 가중치	4안	인구규모
소비지수 규모	5안	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방식)

[안분체계 도출 종합결과]

- [제 1안]: 소비지수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 적용하여 인구규모를 최우선으로 한 배분기준 선택
 - 현행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재정력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검토 필요
 -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으로 인구규모, 차선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자체세입규모 고려

- 인구규모와 자체세입규모의 상관관계는 0.99로 배분기준으로서 큰 차이는 없으나 재정불평등도 완화 측면에서 인구규모가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로 정하자는 학계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배분기준으로 할 경우 소비지의 성격을 반영하되 동시에 소비지수를 근거로 지역별 가중치를 주어 세종시의 지방세입의 왜곡 방지와 효율성을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세종시 차원에서도 세입의 확충에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대전, 충북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세수규모가 현행가중치 적용에 비해 더욱 커졌기에 상생차원에도 긍정적임

□ [제 2안]: 가중치를 배제하고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 고려

- 가중치 배제 시에 세종시의 세입효과(효율성 측면)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이 높은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시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서 지역 간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구조에서 일정부분 균형재정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가중치가 배제되었을 시,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과 함께 기존의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형평화 기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 3안]: 현행 방식(현행의 가중치와 배분기준) 유지

- 현행 가중치 적용 방식은 그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력과 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고,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한 배분기준 역시 지방소비세의 성격을 잘 대변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소비수준(규모)의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을 유지할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됨

- 그리고 세종시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에 비해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인구규모, 자체세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보다 불평등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즉, 자체수입의 경우 0.268로 형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세수의 집중도가 경상권에 집중되는 등 세수의 역전현상이 발생(인구규모도 동일)해 세수 배분의 왜곡의 여지가 있음

□ [제 4안]: 현행 가중치 적용과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 고려

- 현행 가중치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와 함께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 즉,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근거한 안분은 소비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소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이는 소비보다는 소득에 더 밀접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무엇보다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시 불평등도가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수의 안분에 대한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논의됨

□ [제 5안]: 소비지수 규모에 따른 가중치 적용과 민간최종소비지출 따른 배분기준 고려

- 단순하게 부여되는 현행 가중치에 대한 불합리성을 방지하고 소비규모별 가중치를 부여해 합리적인 지방세목으로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즉,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수를 소비지수 규모로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기존의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근거로 시·도별 지방

소비세를 안분하되, 가중치 역시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원 배분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제기됨

□ 추가 논의: 지방소비세의 독립세화 고려

- 지방소비세에 대해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배분하는 현행 구조는 세수에 대해 지역 간 안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실임
- 이에 소비세의 세수분여방식, 공동과세방식을 그 기본으로 하되, 생산지에 입각해서 독립세 방식을 가미한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 강화(혹은 미리 선납하는 방식 고려),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제기됨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1. 연구의 방법	6
2. 주요내용	7
제2장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지방소비세의 개념 및 의의	11
제2절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논의	12
1. 응징성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13
2. 지방소비세의 세원에 관한 논의	14
3. 지방소비세의 소비지 원칙과 소비지표	1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
제3장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운영실태	29
제1절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경과	29
1.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29
2. 지방소비세 도입경과	35
제2절 지방소비세의 개요 및 배분현황	37
1. 지방소비세의 주요내용	37
2.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현황	45

3. 세종시의 재정실태 및 지방소비세 현황	47
제3절 지방소비세 관련 쟁점사항	51
1. 지방소비세 규모의 문제	51
2. 배분지표의 타당성 문제	51
3. 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 문제	52
4. 수도권·비수도권 간 세수격차 문제	53
5. 지역 간 가중치부여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54
제4장 지역별 세수효과 시뮬레이션 및 안분기준 도출	59
제1절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및 지역 간 격차 분석	59
1. 시·도별 지방소비세 현행 5% 분 안분세액	59
2.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 분석	66
제2절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인상 및 격차 완화 효과 시뮬레이션	67
1. 시·도별 지방소비세 15%분 안분세액: 가중치 배제	67
2. 시·도별 지방소비세 15%분 안분세액: 가중치 포함	81
제3절 세종시의 주요 안분기준 타당성 검토	123
1. 지방소비세 주요 안분기준 타당성 검토 필요성	123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조사	12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9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139
제2절 정책적 제언	148
참고문헌	152
부 록	157

표 차례

[표 3-1] 자치단체의 지방세입 규모	30
[표 3-2] 국세와 지방세입 규모 비교	30
[표 3-3] 국세와 지방세출 규모	31
[표 3-4] 지방세 세수구조	33
[표 3-5] 지방세수의 지역 간 격차	34
[표 3-6] 지방소비세의 주요내용	38
[표 3-7] 5% 분의 지방소비세 안분액 계산식	39
[표 3-8]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40
[표 3-9]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40
[표 3-10]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41
[표 3-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41
[표 3-12]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 안분계산식	42
[표 3-13] 지방소비세 보전방식	42
[표 3-14] 최종소비지출의 구조	43
[표 3-15] 2018년도 지역별 안분비율(소비지수)	44
[표 3-16] 세종시의 소비지수 산정	44
[표 3-17]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현황 및 추이	45
[표 3-18] 지방소비세의 수도권-비수도권의 비중 비교	46
[표 3-19] 2017년도 시·도별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47
[표 3-20] 세종시 규모 추이	50
[표 4-1] 가중치 배제 시 지방소비세 현행 5%분 실제세입규모	61

[표 4-2] 가중치 적용 시 지방소비세 현행 5%분 실제세입규모	63
[표 4-3] 가중치 배제 전·후 지방소비세 실제세입규모 비교	64
[표 4-4] 시·도별 재원순증 효과	65
[표 4-5] 지방소비세의 형평화 효과분석	66
[표 4-6] 가중치 배제 시 소비지수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69
[표 4-7] 가중치 배제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71
[표 4-8] 가중치 배제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73
[표 4-9] 가중치 배제 시 인구비율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75
[표 4-10] 가중치 배제 시 자체세입비중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77
[표 4-11]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종합비교(가중치 배제)	79
[표 4-12]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현행)	81
[표 4-13] 현행 가중치 적용 시 소비지수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83
[표 4-14] 현행 가중치 적용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85
[표 4-15] 현행 가중치 적용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87
[표 4-16] 현행 가중치 적용 시 인구비율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89
[표 4-17] 현행 가중치 적용 시 자체세입비중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91
[표 4-18]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종합비교(현행의 가중치 적용)	93
[표 4-19]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재정력 기준)	95
[표 4-20]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소비지수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97
[표 4-21]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99
[표 4-22]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101
[표 4-23]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인구비율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103

[표 4-24]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자체세입비중에 따른 실제세입 규모 시뮬레이션	105
[표 4-25]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종합비교(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107
[표 4-26]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소비지수 규모 기준)	109
[표 4-27]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소비지수에 따른 실제 세입규모 시뮬레이션	111
[표 4-28]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 세입규모 시뮬레이션	113
[표 4-29]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115
[표 4-30]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인구비율에 따른 실제 세입규모 시뮬레이션	117
[표 4-31]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자체세입비중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119
[표 4-32]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종합비교(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121
[표 4-33] 전문가 조사 참여자	124
[표 4-34] 1안 평가점수	127
[표 4-35] 2안 평가점수	128
[표 4-36] 3안 평가점수	128
[표 4-37] 4안 평가점수	129
[표 4-38] 5안 평가점수	129
[표 4-39] 6안 평가점수	130
[표 4-40] 7안 평가점수	130
[표 4-41] 8안 평가점수	131
[표 4-42] 9안 평가점수	131

[표 4-43] 10안 평가점수	132
[표 4-44] 11안 평가점수	132
[표 4-45] 12안 평가점수	133
[표 4-46] 전체 대안별 평가 비교	134
[표 4-47] 대안별 우선순위 및 총계	135
[표 5-1] 15%분 지방소비세 가중치 배제 시뮬레이션 결과	141
[표 5-2] 15%분 지방소비세 현행 가중치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142
[표 5-3] 15%분 지방소비세 재정력 가중치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143
[표 5-4] 15%분 지방소비세 소비지수 규모 가중치 시뮬레이션 결과	145
[표 5-5] 대안별 평균점수 및 우선순위 비교	147

그림 차례

[그림 3-1] 국세와 지방세 비중	31
[그림 3-2] 지방세입과 세출 간의 괴리	32
[그림 3-3] 1인당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비중 추이	35
[그림 3-4] 세종시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48
[그림 3-5] 세종시 지방세의 연도별 현황	49
[그림 3-6] 세종시 규모 추이	50
[그림 4-1] 가중치 배제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80
[그림 4-2] 현행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94
[그림 4-3] 재정력에 따른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108
[그림 4-4] 소비지수에 따른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122
[그림 4-5]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	125
[그림 4-6] 현행 가중치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	126
[그림 5-1] 안분체계 도출 종합결과	148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95년 6월 지방의회 및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 23년이 지난 현재,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중앙집권적 세원배분 구조를 지닌 한계로 인하여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매우 취약한 편임
 - 8:2의 세입구조(2017년 기준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 정도)와 6:4의 세출구조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현행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세목선택권, 세율결정권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김홍주, 2018a) 과세권의 제약 및 취약한 재정구조를 나타냄(김홍주, 2018b)
- 현재 자치단체는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부와 관련 없이 자주적으로 쓸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자주재원: 자체세입+지방교부세)
 - 2017년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를 살펴볼 때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등 몇몇 광역시·도에 불과함(지방재정 365)
 -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고유사무 처리, 법령

상에 의무지출 등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신규사업에 편성 가능한 재원은 총 재원의 2.69%에 불과함(행정안전부, 2017)

- 세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10.0%증가, 08년 평균 17.4%에서 16년 평균 25.3%)로 대응 지방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김홍주, 2018b)

○ 즉, 지방의 재정적 환경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주요 국정외제로 선정되었으며, 분권(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의 핵심으로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8:2에서 7:3, 향후 6:4까지 조정할 계획에 있으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의 어려움이 존재함

- 국세와 지방세원의 기본골격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의 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의 보정은 있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함

○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부가가치세의 11% → 21%)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와 수직적 불균형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논의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신세원 발굴, 지방세·비과세 감면율 15%수준 관리 등이 고려

- 이 중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는 세원조정은 지방소비세(2010년 도입)로서 이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된 유일한 사례에 해당(이영환 외, 2009)

○ 그러나 최근 지방소비세의 증가는 현행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

출에 근거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과
가중치 역시 소비지출의 원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변
형되어 지방세 기본 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세와 지방세 이양금액을 20조원으로 산정할 경우, 지방소비세, 지
방소득세 등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수도권 9.9조원, 비수도권 6.1조
원이 예상되며 이는 수도권에 매우 유리한 자원 배분임
- 물론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수도권 외 도 300%, 세종시는 예외적으로 300% 적용) 지
역별 격차를 완화하고 있으나 가중치 역시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됨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재원규모의 확대(세율인상)
와 더불어 합리적인 세수배분 방식의 고려를 위해 보다 적합한 안분
체계 연구가 필요함
- 향후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세종시의 세입에 끼치는 영향과 세종시
에 보다 적합한 안분체계 도출을 위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첫째, 새 정부 이후 재정분권이라는 주요 국정의제에 맞
게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종시
에 세수증액 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둘째, 국세·지방세 조정에 따른 세입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증액된 재
원규모의 확대에 대응하여 세종시의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즉, 지방소비세 인상 시 현행 가중치 및 배분기준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지방소비세에 관한 이론적 배경 검토, 선행연구 검토 등 문헌조사와 주요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 지방소비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지방소비세 확충의 파급효과,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세종시를 포함한 각 광역시·도의 지방소비세 현황 검토
- 배분기준 및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도출된 기준을 통한 통계분석 실시
 - 지방재정자료를 바탕으로 권역별 가중치 및 배분기준이 되는 변수를 활용하여 재정확충 효과분석(시뮬레이션 실시)
 -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 엔트로피 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 분석

$$\text{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G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text{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 I = 1 - \frac{Y_c}{\mu}$$

$$\text{엔트로피지수(Entropy index) : } GE(a) = \frac{1}{a^2 - a} \left[\frac{1}{n} \sum_{i=1}^n \left(\frac{y_i}{\mu} \right)^a - 1 \right]$$

-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 및 심층설문조사 실시

2. 주요내용

- 본 보고서는 1장 서론, 2장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 3장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운영실태, 4장 지역 별 세수효과 시뮬레이션 및 안분기준 도출,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됨
- 1장은 서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함
- 2장은 지방소비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함
 - 지방소비세의 개념 및 의의, 지방소비세 이론, 그리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함
- 3장은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함
 -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경과, 지방소비세의 개요 및 배분현황, 지방소비세 관련 쟁점사항 검토
- 4장은 지역별 세수효과 시뮬레이션 및 안분기준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소비세의 현행 안분기준에 다른 시·도 간 세수 분석, 서울인상에 따른 세수 인상 효과 시뮬레이션, 세종시의 안분기준 도출 및 타당성 검토
-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진행된 연구의 요약 및 향후 소비세 확대에 대응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음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지방소비세의 개념 및 의의
- 제2절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논의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장

제2장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소비세의 개념 및 의의

- 지방세(地方稅, local tax)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수요를 충당하도록 주민 혹은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특별한 보상 및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재화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함(이영환 외, 2009).
 - 이 때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은 법률적 근거에 따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통해 새로운 지방세목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 지방세는 국세와 같이 조세체계를 이루는 근간으로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는 국세와 차이가 이가 있으나 ‘조세’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봄
 -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복리에 관한사무에 대한 재원의 별도 징수, 지자체 주민에 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
 - 공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편의성의 원칙, 징세비 최소의 원칙 등 조세의 일반원칙에 더해 지방세의 기본원칙은 보편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신장성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등이 있음

제2절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논의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세의 세목은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9개 세목,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개의 세목을 더해 총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이명박 정부시기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의 재원으로 전환시킨 것임
- 소비세(consumption tax)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소비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됨(최길수, 2010)
 - 원칙적으로 일반소비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며, 이에 반해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 유흥업소, 승용차 등에 대한 과세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에 전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비세의 개념적 정의를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6조를 준용(「지방세법」 제65조, 제67조)하며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및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함(「지방세법」 제66조)
-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재정분권의 강화, 경제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경쟁체제 수립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방세수의 연계강화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임(배인명, 2011)

- 그러나 서울결정권의 부재, 소비지표의 타당성 문제, 재정격차의 우려 등으로 부정적 의견도 제시됨(최병호, 2010)

1. 응익성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 세원의 배분에 있어서 지방세 원칙으로 주로 논의되는 것이 보편성, 응익성, 신장성, 안정성, 정착성 등이며 이 중 특히 '응익성'과 '정착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됨(김대영, 2013)
- 일반적으로 응익성이 강한 세원은 하위정부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주장(Oates, 1996), 특히 지방세의 경우 응익성과 정착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세원은 지방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Bird(1999)는 지방소비세를 응익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세임을 강조하였고, McLure & Martinez-Vazquez(2002)는 편익 혹은 응익성은 소비·소득과 연관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세를 단일세율로 과세하면 대체로 응익과세화 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자인 오연천(2000), 주만수·임성일(2006) 역시 여러 세원 중에 소비과세가 응익성, 가격기능이 강하며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에 괴리를 따르며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를 해소함에 있어 매우 적절한 세원임을 주장함
 - 이에 반해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과 같은 세목은 중앙정부, 주정부 및 광역지방정부는 도매판매세(retail sales tax) 등과 같은 소비과세 세목, 재산세 등 재산과세 관련 세목은 그 하위 지방정부에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하기도 함(Bird, 1999)
-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 재정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자주재원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에 상응해서 중앙으로부터 이전 재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재원(의존재원)을 늘리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즉, 중앙정부의 과도한 이전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착각(fiscal illusion), 연성계약예산(soft budget constraints),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이상범, 2010)
- 지방소비세의 확충과 관련해 지방의 세재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응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모색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방향으로 볼 수 있음

2. 지방소비세의 세원에 관한 논의

- 재정분권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지출책임을 가지도록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 스스로 조달할 책임을 배분하여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에게 부족한 재원을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보다 세원의 배분론에 합당하지 않은 세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김대영, 2013)
- 지방소비세는 유일하게 국세(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전된 세목으로 세원은 국세로 징수되는 소비과세의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을 지방세로 이전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중요해짐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 및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납부)하는 일반소비과세의 전형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OECD의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는 세목임(김대영, 2013)
-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재정분권화의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통제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이상범, 2010)
-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전문가 및 학자들은 그 동안 부가가치세가 국세이어야 한다는 점에 크게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실현불가능성, 높은 행정비용 및 순응비용, 중앙정부의 거부감 등으로 지적되어 왔음
 - 전통적 세원배분 이론(응의성, 충분성, 안전성, 보편성 등)에서 역시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은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소득 및 소비과세의 경우는 중앙정부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기도 함(김종순, 2001)
 - 이는 지방세에 대해 하위정부가 지방세에 대한 징수 여부를 결정하고, 세율과 세율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조세행정을 담당, 조세수입의 전체를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나타나기도 함(Bird, 2011; 최병호, 2018)
- 최근 분권화 개헌 이슈와 함께 국정과제로도 재정분권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소비세의 확충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 Oates(1993)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자원조달 및 운영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결정을 통해서 사회적 후생이 향상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결정은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함(박충훈, 1997)

-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주요 지방세로 활용하며 이는 국제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익의 원칙에 적합한 지방소비세의 소비지 원칙을 고려해야 함(Martinez - Vazquez, 2006)
- 이밖에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의 세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광채기(2000), 오연천(2000), 이삼주(2003), 라휘문(2005), 이재은(2006), 손희준(2008) 등은 부가가치세의 전체를, 김정훈(1996), 이영희(2001) 등은 지역적 소비성격을 가진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을 대상세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 재정분권이 심화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데 반해 전통적 세원배분이론에 따른 지역 간 재정과 세출격차의 심화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음이 제기됨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책임, 경제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비용과 편익의 일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세입이 보장된 지방소비세에 확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임(이상범, 2010)

3. 지방소비세의 소비지 원칙과 소비지표

-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의 연계로 지역발전에 대한 자발적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주재정권을 강화하여 지방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위주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최길수·설영훈, 2011)
- 지방소비세는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원

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는 처음에 부가가치세수의 5%, 그리고 이후 취득세 감소분을 위한 보전금 조치로 6%가 추가되어 부가가치세의 총 11%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지방소비세는 특정 지방의 당해 지방의 몫인 지방소비세수를 귀속시키기 위한 최종소비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찾아 최종적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로 결정하게 됨

- 여기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란 “일정한 기간 중 최종생산물에 대해 가계와 민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을 의미하고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지출목적에 따라 식료품 및 주류·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비목으로 구성되며 민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교육, 보건·복지, 환경,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김재훈, 2011).

- 배분지표는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의해서 시·도에 세수를 귀속시키고 있으며 지역별 세원의 편차를 감안하여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를 구분하여 각각의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광역도 300%)를 적용하고 있음

- 여기서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도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지방소비세의 세원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였음(배인명, 2011)

○ 지방소비세는 그 세원을 부가가치세로 공동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지 원칙 혹은 소비지 원칙에 대한 세수의 귀착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전단계매입공제 방식을 채택해서 생산지 원칙에 근거한 지방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징수지와 최종세부담의 거주지 불일치 문제가 있음(김대영, 2012)

-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때, 부가가치세로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한 경우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국가에

서 지방정부가 지방소비세 징수 시 조세경쟁의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되어 결국 제도 도입으로 편익에 비해 비용 문제가 발생하여 그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임(이상범, 2010)

- 한국의 지방소비세는 소비지표를 반영한 배분공식에 의해 세수가 배분되는데,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소비지원칙이 아닌 생산지원칙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면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해 이를 기준으로 세수를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김대영, 2012)
 -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있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율결정권과 같은 과세권을 포기하는 대신 국세재원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소비지표를 반영한 배분방식이 고려되었던 상황임(라휘문, 2005; 주만수·임성일, 2006)
- 지방소비세가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려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지방세수가 최종소비자인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귀속되는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활용되는 소비반영지표는 민간최종소비지출로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통계 중에서 시·도별 규모를 보여주는 가장 합당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비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가 전혀 포착되지 않아 소비지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데 그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이상훈·김진하, 2013; 이규배, 2016)
 - 학자별로 소비반영지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김대영(2003; 2005)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소매업 과세표준) 등을 제시하였고, 김현아(2003)는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 인구 등을, 주만수·임성일(2006)은 숙박 및 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매출액, 그리고 소매업매출액 등을 제시함
 - 이와 함께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소비지수에

대한 논의에 있어 현재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소비지수 규모 등을 고려한 가중치 산정의 논의도(김중순·홍근석·장경원, 2011) 함께 제시됨

-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다른 대안과 함께 가중치 부여방식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향후 6:4까지 조정)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약 21%까지 높일 방침으로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제기된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에 따라 세원배분방식과 세원을 중심으로 대안별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도입시기의 전후로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 문제점 및 배분지표 및 가중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안분기준, 배분지표의 평가 및 대안 등), 도입효과 등이 연구되어 왔음
- 먼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오연천(2001), 김현아(2003), 광채기(2008), 이상범(2010), 김정완(2010)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음
 - 오연천(2001)은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 지역의 편익의 원칙에 기초한 지방세원의 확립이 중요하고 그 중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주장함
 - 김현아(2003)는 중앙정부에 비교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더욱 많이 가지고 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소비세를 편익세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함
 - 광채기(2008)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도를 도모하기 위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체계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함
 - 이상범(2010)은 지방세원이 재산과세 위주, 중앙집권적 세입구조(이전재원 위주),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의 문제점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의 중요성을 지적함

- 김정완(2010)은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치역량강화, 그리고 지역의 재정책임성의 강화 입장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을, 김재훈(2011)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한 의존재원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이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함
- 둘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적되는 지방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된 연구들은 배분지표, 권역별 가중치, 지방소비세의 규모 및 세율결정권 차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김동욱, 2009; 김정완, 2010; 이상범, 2010; 최길수·설영훈, 2011; 김재훈, 2011; 이상훈·김진하, 2011; 2013; 주만수, 2012; 임성일, 2012; 정재근, 2012; 김대영, 2012; 전라남도, 2017; 인천광역시, 2017 등)
- 박지현·안정서(2016)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후에 지방재정,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방소비세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김정완(2010)은 현재 활용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내 총생산 점유율, 재정자립도, 지역생산의 역외유출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를 살펴보았음
- 이상범(2010)은 지역별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이 되는 것을 재정력 지수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가중치의 적용보다는 인구규모에 반비례하는 재정력 지수에 근거하여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최길수·설영훈(2011)은 재정자립도, 1인당 GRDP, 인구규모, 1인당 소득세액 등을 중심으로 소비세의 배분을 분석하였으나 시·도간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 특정의 배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주장을 피력하지는 않음
- 정재근(2012)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둘러싼 쟁점을 고찰하였으며 이 중 현재 안분지표로 활용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보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이와 유사한 연구는 김대영(2012)의 연구로 지방소비세의 소비반영 지표를 검토하였고, 3가지 안분지표(현행 체제, 소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매·음식·숙박업의 세가지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를 통하여 지역별 지방세입 구조의 변화를 살펴봄
- 최종민간소비지출을 대체할 만한 소비지표로서 업종별 매출액을 활용한 토착산업지표(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할 것을 제한한 연구자는 이상훈·김진하(2011; 2013), 임성일(2012)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앞선 논의가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관한 것이라면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가중치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소비세가 조세의 본연의 배분 방식의 개선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됨
- 학계를 중심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중치를 배제하고 지역 간 재원의 불균등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맡기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타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경우 현재 지방소비세의 안분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식의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함
- 김동욱(2009)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있어서 현 3단계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을 분석한 결과, 가중치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및 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
- 김정완(2010)은 지방소비세의 배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와 같이 분명하고 타당한 지표를 통한 배분과 가중치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상훈·김진하(2011), 주만수(2012) 역시 권역별 가중치를 배제하여 지방교부세의 역할을 지방소비세가 할 수 없는 배분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김재훈(2011)은 현행 수도권, 비수도권 및 광역시·도의

가중치 값에 대하여 배분산식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정지선 외(2013)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가중치의 부여가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 바, 각 지자체의 재정적인 편차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순화 시킨 것이 아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논의함
- 전라남도의 경우 배분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GRDP 혹은 최종소비지출로 변경할 뿐 아니라 가중치 역시 기존 3단계에서 재정력 지수에 따라 5단계(100%~500%)의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2017년 10월 26일자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자료 참고)

- 이와 더불어 인천광역시는 기존에 진행해 온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고자 배분기준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지수(소매/음식/숙박업)를 고려하거나 가중치에 있어서는 소비지출의 비중과 상관없는 지역별 가중치 적용의 폐단을 지적하여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도록 소비규모별 가중치 부여에 보다 합리적인 방점을 두어 5단계(소비지수에 따라 100%, 150%, 200%, 250%, 300% 적용)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2017년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참고)

○ 셋째, 지방소비세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는 구정모 외(2000), 이삼주(2001), 노근호(2003), 남창우·구정모(2005), 이영환·황진영·신영임(2009), 문병근(2010), 김종순·홍근석·장경원(2011), 박지현·안정서(2016) 등에 의해 수행됨

- 구정모 외(2000)의 연구는 지방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해보았으며 특히,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재정불평등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음
- 이삼주(2001)는 지방소비세 도입 전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지방소비세제의 쟁점과 자원배분방식을 4가지로 검토하였음

- 며, 배분방식에 따라 지역별 배분액수를 분석하였음
- 노근호(2003)는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지방소비세에 관해서는 총 지방세수에 소비과세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지역적 분포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영환·황진영·신영임(2009)에 의해 이와 유사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 남충우·구정모(2005)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분포의 지역적 편재 분석, 지역별 불평등도 분석, 그리고 지방세 도입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1인당 지방세수의 지역별 편중도를 분석하였음
 - 김경수(2009)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따라 시·도별 재정영향분석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관련 쟁점사항 검토(법정교부세율 인하 유보 등)에 따라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별 세수불균형을 조정하는 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김종순·홍근석·장경원(2011)에 의하여 이와 유사하고 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음
 - 문병근(2010)은 지방소비세의 도입 이전과 이후에 따라 재정책충효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박지현·안정서(2016)는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방소비세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 이후 지방소비세가 지방의 재정자립 및 세수확충에 있어서 그 기여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여 이를 위해 재원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을 지적한 연구가 수행됨
- 이상훈·김진하(2011)는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되고 이에 따른 세수감소의 규모가 부가가치세 5%와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의 이양비율을 20%로 더욱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유태현·한재명(2014)은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안과 불합리한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6%까지 확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분권화 개헌과 함께 지방으로 국가의 재원을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 노력의 측면에서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해볼 때, 국세와 지방세 간의 합리적 세목조정의 일환인 지방소비세 비율의 확대가 지방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종시 대응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안분체계를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세종시에 적용된 가중치는 300%로 적용되나, 지방소비세에 대한 가중치 적용방식, 배분기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학계 및 각 자치단체(행안부포함)에서 제기하기에 향후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확충되는데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운영실태

제1절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경과

제2절 지방소비세의 개요 및 배분현황

제3절 지방소비세 관련 쟁점사항

3장

제3장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운영실태

제1절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및 경과

1.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는 그 양적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세원배부 구조에 기인함(김홍주, 2018b)
- 2008년 말 이명박 정부에 감세정책, 세제개편,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세수감소 우려와 반발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되었음(김종순·홍근석·장경원, 2011)
 - 이 시기 정부의 감세정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액수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감소하였고, 내국세의 감소로 내국세 법정율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감소하였음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정부의 내국세 감세조치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의존재원이 모두 감소하게 됨(박지현·안정서, 2016)
- 지방소비세의 확충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됨

1) 지방세입과 세출의 불일치

- 경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속에서 세입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 비중은 여전히 8: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인데 반해 이전수입의 증가율은 8%의 상황으로 중앙정부 위주로 편향됨(김홍주, 2018a)

- 다음 [표 3-1]에서 보듯이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은 37.3%(2017년 기준)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지방세의 비중은 그중에서 28.1%, 세외수입은 9.2%로 재원조달 기능이 매우 취약함

[표 3-1] 자치단체의 지방세입 규모

(단위: 금액(조 원), 비중(%))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합계	228.9	100.0	246.1	100.0	257.2	100.0
자체세입	81.8	35.8	89.0	36.2	95.9	37.3
지방세	60.4	26.4	65.8	36.7	72.2	28.1
세외수입	21.4	9.4	23.2	9.5	23.7	9.2
이전수입	122.3	53.4	126.3	51.3	130.6	50.8
보전수입	24.8	10.8	30.8	12.5	30.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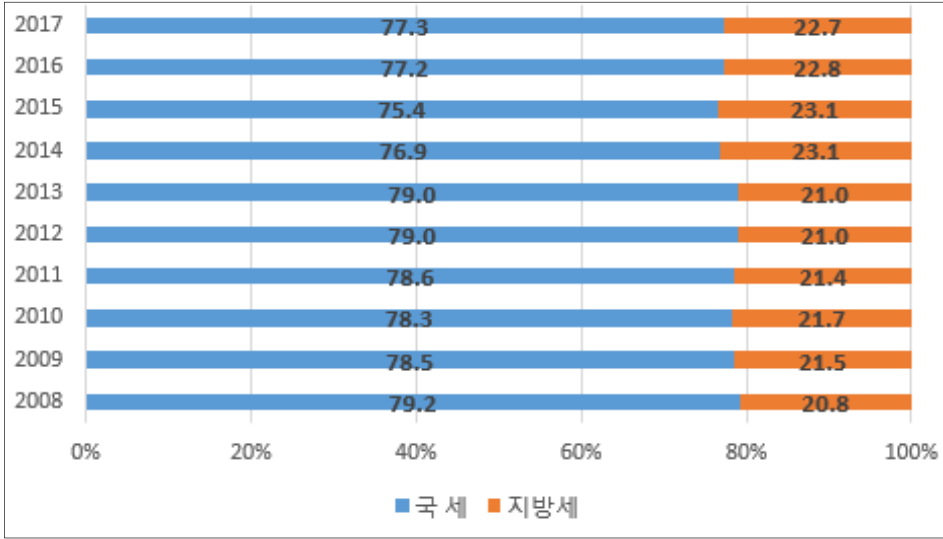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총계, 당초예산)」

- 다음 [표 3-2]와 [그림 3-1]은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및 비중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방세 비중의 열악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표 3-2] 국세와 지방세입 규모 비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세 (조원)	164.5	177.7	192.4	203.0	201.9	205.5	217.9	242.6
국세비중 (%)	78.5	78.3	78.6	79.0	79.0	76.9	75.4	76.3
지방세 (조원)	45.2	49.2	52.3	53.9	53.8	61.7	71.0	75.5
지방세 비중(%)	21.5	21.7	21.4	21.0	21.0	23.1	24.6	23.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그림 3-1] 국세와 지방세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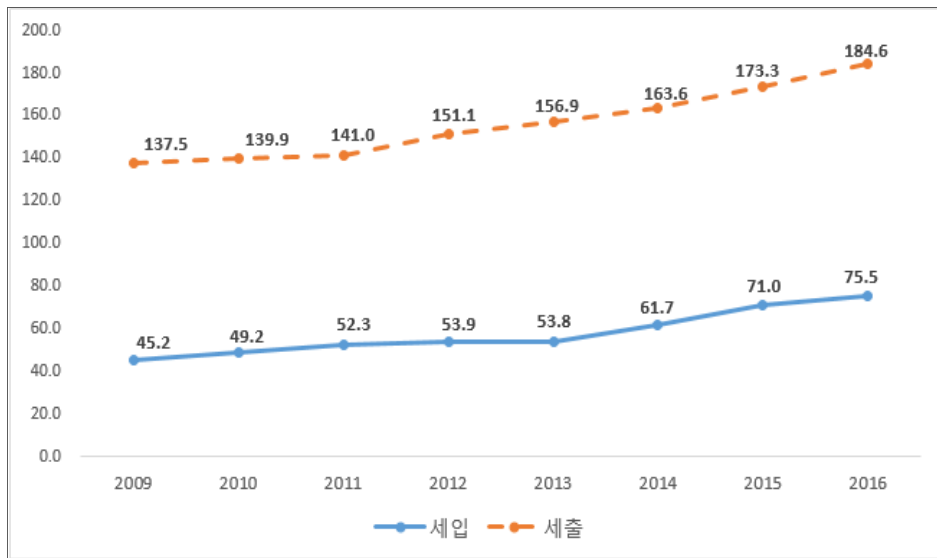
- 이에 반해 세출구조는 세입과는 다르게 지방의 지출이 40%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세입과 세출간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3] 국세와 지방세출 규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55.0	365.8	376.6	399.7	420.5	438.2	459.6	480.3	496.2
국가 (조 원)	217.5	225.9	235.6	248.6	263.6	274.7	286.3	295.7	303.1
지방 (조 원)	137.5	139.9	141	151.1	156.9	163.6	173.3	184.6	193.1
국가 (%)	61.3	61.8	62.6	62.2	62.7	62.7	62.3	61.6	61.1
지방 (%)	38.7	38.2	37.4	37.8	37.3	37.3	37.7	38.4	38.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세입과 세출 간의 간극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의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세입규모가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 지방세입과 세출 간의 괴리

2)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

- 다음 [표 3-4]는 지방세의 재산과제 중심의 구조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취약한 구조임을 알 수 있음
 - 소득과세(주민세, 지방소득세) 20.3%, 소비과세(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14.7%, 재산과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53.2%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과세의 세목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김종순·홍근석·장경원(2011)은 재산과세는 세수의 증가율이 지방소비세와 비교해보면 전체의 세수 증가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의 재정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함

-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구조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 낮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나타난 세수의 감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재정압박을 줄 것으로 판단됨

[표 3-4] 지방세 세수구조

구분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기타
세수 (조 원)	36.7	14.0	10.2	8.1
비중 (%)	53.2	20.3	14.7	11.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총계, 최종예산)」

3) 지역 간 재정격차의 심화

- 일반적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정력지수, 지방세 수입(인구 및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함
 - 이 중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수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 다음 [표 3-5]는 기초자치단체를 광역단위로 묶어 각각의 권역별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역 간 재정격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0과 1사이의 값에서 0에 근접할수록 재정력 격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함(김종순·홍근석·장경원, 2011)
 - 여기서 n 은 지방자치단체 수, Y_i 는 지방자치단체, i 의 수요자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을 그리고 μ 는 각 변수의 평균 예산액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냄(김흥주·강인호, 2017)

$$Gini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표 3-5] 지방세수의 지역 간 격차

연도	전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2009	0.462	0.213	0.308	0.335	0.432	0.456
2010	0.458	0.212	0.320	0.343	0.403	0.461
2011	0.464	0.210	0.311	0.373	0.430	0.459
2012	0.475	0.211	0.329	0.392	0.448	0.473
2013	0.474	0.203	0.313	0.382	0.440	0.470
2014	0.473	0.217	0.310	0.384	0.431	0.475
2015	0.492	0.239	0.318	0.456	0.432	0.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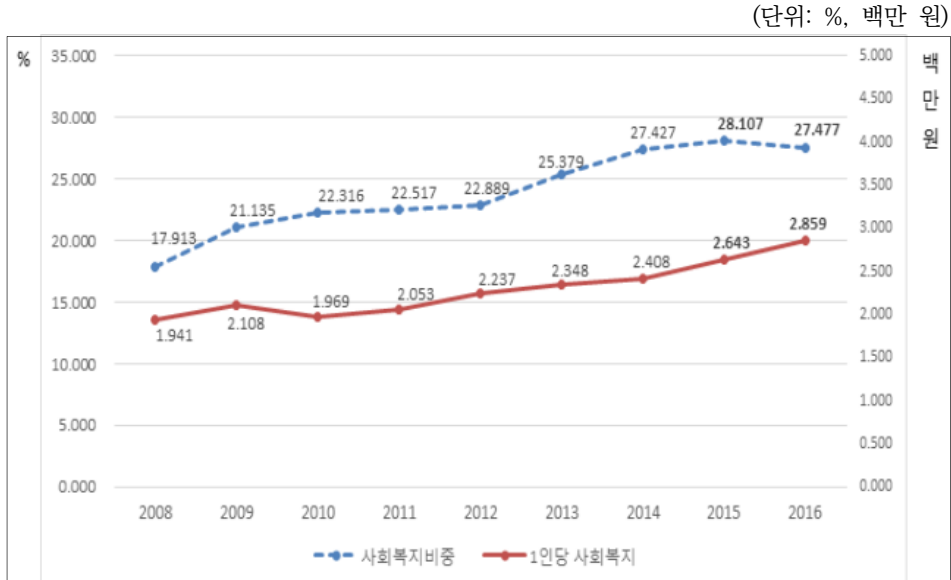
자료: 김홍주·강인호(2017)

- 권역별로 재정력 격차를 살펴보면 경상권, 전라권의 재정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김홍주·강인호(2017)의 연구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지방세로 중심으로 시·군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지니계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2009년 지니계수가 0.462에서 2015년 0.49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음

4) 사회복지비 등 지방의 재정수요 급증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권의 반응에 기인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에 국고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지방에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대응비(matching fund)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은 매우 시급한 상황임
- 다음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시·군·구 226개(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제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평균 변화를 보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함을 나타냈으며, 이는 사회복지비 비중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3] 1인당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비중 추이

자료: 김흥주·황광선(2017)

2. 지방소비세 도입경과

- 지방소비세의 도입경과를 살펴보면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된 이후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3년에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소비세율 10%로 인상하고자 했음
 - 2013년 세율 5% 유지에서 10%의 확대 협의한 이후 2013년 시행된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조치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의 목적으로 6%를 인상하여 2014년에 세율을 11%까지 확대함
 - 6%의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인상분은 2013년 10% 확대와 관련된 정부의 인상안과는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5% 인상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최근 박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2014년 12월 30일) 2020년까지 세율의 16%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2016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음
- 아울러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라는 국정과제에 맞게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의 21%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이 모색됨

제2절 지방소비세의 개요 및 배분현황

1. 지방소비세의 주요내용

1) 지방소비세의 개관

- 지방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2010년 지방세세목으로 신설되었으며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세수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취하였음
 - 이러한 형태는 부가세(sur tax)의 형태, 독립세의 형태, 혹은 공동세의 일종으로 보기에 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정지선·권오현·이기욱, 2013)
 - 지방소비세의 납세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 국세정창, 관세청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내고, 이를 다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배분되는 구조를 지님(정지선·권오현·이기욱, 2013)
- 2013년에 다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표 3-6]과 같음

[표 3-6] 지방소비세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과세대상 (제65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
납세의무자 (제66조)	지방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납세지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름
특별징수의무자 (제68조)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 함
과세표준 및 세액 (제69조)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며 이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
신고 및 납부 등 (제70조)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해야 함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납입 (제71조)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함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함
부과 징수 등의 특례 (제72조)	지방소비세의 부과 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의 준용 (제73조)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함

자료: 「지방세법」 제6장 재구성

2)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 및 방식

(1) 지방소비세 안분개요

-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별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안분함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의 11%로 하며 이 중 5%의 배분과 6%의 배분방식은 구분함
-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마다 교육부장관,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안분기준을 통보함

(2) 안분기준

- 이 중에서 5%의 배분방식을 살펴보면 지역별 소비지출을 고려한 소비지수와 각 권역별 가중치를 활용한 값을 통해 배분되었음
 - 부가가치세의 5%에 대한 배분은 2013년도까지 각 지역별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배분방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자세히 나타나 있음

[표 3-7] 5% 분의 지방소비세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안분액) =

$$\text{지방소비세과세표준} \cdot 5\%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가중치}_i}{\sum_i (\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_i \times \text{가중치}_i)}$$

- 시·도별 소비비중(가중치: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매년 1월 1일 발표한 민간최종소비지출
- 여기서 i 는 광역자치단체를 의미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재구성

- 이후 2014년에 취득세율 인하(주택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분 6%가 추가되면서 지방소비세 비중이 증가하였음

-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 증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구금의 감소 비율에 따라 각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에 배분됨
- 취득세 등의 보전에 대해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을 [표 3-8]에 정리하였음

[표 3-8] 취득세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A-(A \times B)-(A \times C)]-D \times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A-(A \times B)-(A \times C) \div 11]\}$
- E: 해당 시·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다음 [표 3-9]는 지방교육세의 안분액 계산식을 보여주는 바 지방교육세에 대한 보전분은 취득세 등의 보전의 10%이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이후 교육청으로 이전됨

[표 3-9]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지방교부세는 부가가치세 6%가 지방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적용해 보통교부세 안분비율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되어지며 다음 [표 3-10]에서와 같은 안분액 계산식을 따름

[표 3-10]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A×B)×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에 대해 해당 교육청의 보통교부세 배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이때 불필요하게 지방교육청으로 진출되는 허수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며(박지현·안정서, 2016),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표 3-11]에 정리하였음

[표 3-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A×B)×C-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총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총당되는 안분액
〈총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총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A×B)×C

- A: 제7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제7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재구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폐지·설치·분리·병합 등으로 새로 설치된 시·도가 있는 경우 변경구역이 종래 속했던 시·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된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 및 발표

되는 해까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분됨

- 여기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시·도별 지수이며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근거 수도권은 100%, 수도권외 광역시는 200%, 특별자치시, 수도권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300%의 가중치를 둠

○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계산식을 [표 3-12]에 정리하였음

[표 3-12]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 안분계산식

$$\text{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 = \text{변경구역이 종래 속했던 시도의 지방소비세액} \times \frac{\text{변경구역의 인구}}{\text{변경구역이 종래 속했던 시도의 전체인구}}$$

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 다음 [표 3-13]은 지방소비세 보전방식을 종합해서 정리하였음

[표 3-13] 지방소비세 보전방식

세입 구분	적용 안분기준	보전방식	
5%	지역별 소비지수	각 시·도로 납입	
취득세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98%) +사회복지수요 비율(2%)		
6%	지방교육세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100%)	각 시·도로 납입(시·도→교육청)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해당 시·도 및 시·군·구로 납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	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납입 ※ 교육전출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각 시·도로 납입

자료: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내부자료

(3) 소비지수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 및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함

- 여기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특정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지출측면의 GRDP 중에 민간부분의 소비지출 가액을 의미함(이상훈·김진아, 2013)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가계최종소비지출과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주류 및 담배, 임료 및 수도광열, 의료보건, 교통, 통신, 의류 및 신발 등 12가지 비목으로 분류되며 이에 반해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보건·복지 및 환경,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등으로 구성됨
- 다음 [표 3-14]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표 3-14] 최종소비지출의 구조

최종소비지출(A+B)									
민간최종소비지출(A)									정부 최종 소비 지출 (B)
가계최종소비지출(12개 부문)					민간 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4개 부문)				
식료품 및 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담배	임료 및 수도 광열	...	교육	보건 복지 및 환경	오락 문화 및 종교	기 타	

자료: 김대영(2012)

- 다음 [표 3-15]는 2018년도 기준 광역시·도별 소비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5%의 안분비율(소비지수: 현행 가중치가 적용됨)에 해당함

[표 3-15] 2018년도 지역별 안분비율(소비지수)

시·도	소비지수(%)	시·도	소비지수(%)
전국(계)	100.00	경기	13.77
서울	13.75	강원	4.62
부산	7.75	충북	4.73
대구	5.36	충남	6.08
인천	2.90	전북	5.41
광주	3.32	전남	5.26
대전	3.47	경북	7.93
울산	2.67	경남	10.29
세종	0.81	제주	1.90

자료: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내부자료 재구성

○ 다음 [표 3-16]은 세종시 소비지수 산정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6] 세종시의 소비지수 산정

<p>충북편입분(①) =</p> $\text{충북 소비지수} \times \frac{\text{세종시 주민등록 충북 편입인구}}{\text{충북 주민등록인구}}$
<p>충남편입분(②) =</p> $\text{충남 소비지수} \times \frac{\text{세종시 주민등록 충남 편입인구}}{\text{충남 주민등록인구}}$
<p>- 예) 2012년 기준 세종시의 충북(청원) 및 충남(연기+공주) 편입인구는 각각 6,677명, 88,711명으로 충남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각각 1,562,903, 2,101,284명으로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소비지수가 산정됨</p> <p>- 세종시 소비지수 산정(①+②) = 0.27%</p>
<p>① $0.02 = 4.35\% \times \frac{6,677}{1,562,903}$</p>
<p>② $0.25\% = 6.01\% \times \frac{88,711}{2,101,284}$</p>

자료: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내부자료

2.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현황

1)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현황 분석

○ 다음 [표 3-17]은 지역별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2012년 기준 15.5%의 비중에서 2017년 기준 17.9%, 경기도의 경우 2012년 기준 14.1%에서 2017년 기준 19.1%로 서울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17]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현황 및 추이

(지방소비세 단위 : 백만 원)

자치 단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 소비세	비중 (%)	지방 소비세	비중 (%)	지방 소비세	비중 (%)	지방 소비세	비중 (%)	지방 소비세	비중 (%)	지방 소비세	비중 (%)
합계	3,033,522	100.0	3,141,814	100.0	5,855,655	100.0	6,002,721	100.0	6,401,149	100.0	7,273,752	100.0
서울	469,755	15.5	480,403	15.3	977,587	16.8	977,789	16.3	1,022,322	17.1	1,305,300	17.9
부산	244,924	8.1	254,160	8.1	476,698	8.2	476,453	7.9	505,016	7.9	561,679	7.7
대구	163,445	5.4	169,275	5.4	333,544	5.7	336,865	5.6	348,095	5.4	376,652	5.2
인천	90,854	3.0	94,189	3.0	276,585	4.7	274,191	4.6	276,184	4.3	313,125	4.3
광주	97,667	3.2	101,551	3.2	192,096	3.3	198,528	3.3	204,317	3.2	225,290	3.1
대전	107,671	3.5	111,555	3.6	199,259	3.4	201,252	3.4	208,057	3.3	232,474	3.2
울산	81,573	2.7	83,649	2.7	163,033	2.8	167,708	2.8	173,170	2.7	191,394	2.6
세종	3,915	0.1	10,015	0.3	47,182	0.8	49,695	0.8	53,290	0.8	62,450	0.9
경기	426,751	14.1	441,949	14.1	1,033,004	17.7	1,091,678	18.2	1,201,420	18.8	1,388,366	19.1
강원	135,665	4.5	140,506	4.5	212,762	3.6	219,299	3.7	230,041	3.6	259,942	3.6
충북	131,557	4.3	136,782	4.4	216,836	3.7	227,397	3.8	234,937	3.7	260,880	3.6
충남	178,773	5.9	180,822	5.8	287,616	4.9	299,729	5.0	310,183	4.8	347,515	4.8
전북	154,771	5.1	161,182	5.1	239,887	4.1	252,283	4.2	266,810	4.2	297,643	4.1
전남	149,443	4.9	155,120	4.9	227,258	3.9	239,740	4.0	251,665	3.9	281,540	3.9
경북	231,500	7.6	240,683	7.7	364,838	6.3	374,997	6.2	392,035	6.1	438,793	6.0
경남	312,273	10.3	324,675	10.3	489,603	8.4	511,348	8.5	541,489	8.5	598,480	8.2
제주	52,986	1.7	55,299	1.8	97,866	1.7	103,769	1.7	112,117	1.8	132,169	1.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세통계연감」

2) 지방소비세와 지방세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 비교

- 다음 [표 3-18]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비세 배분 현황 및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천을 제외한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시와 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18] 지방소비세의 수도권-비수도권의 비중 비교

(지방소비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자치 단체	2015		2016		2017	
		지방 소비세	비중 (%)	지방 소비세	비중 (%)	지방 소비세	비중 (%)
수도권	서울	977,789	16.3	1,092,322	17.1	1,305,360	17.9
	인천	274,191	4.6	276,184	4.3	313,125	4.3
	경기	1,091,678	18.2	1,201,420	18.8	1,388,366	19.1
	합계	2,343,658	39.0	2,569,926	40.1	3,006,851	41.3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476,453	7.9	505,016	7.9	561,679	7.7
	대구	336,865	5.6	348,095	5.4	376,652	5.2
	광주	198,528	3.3	204,317	3.2	225,290	3.1
	대전	201,252	3.4	208,057	3.3	232,474	3.2
	울산	167,708	2.8	173,170	2.7	191,394	2.6
	세종	49,695	0.8	53,290	0.8	62,450	0.9
	합계	1,430,501	23.8	1,491,945	23.3	1,649,939	22.7
비수도권 도	강원	219,299	3.7	230,041	3.6	259,942	3.6
	충북	227,397	3.8	234,937	3.7	260,880	3.6
	충남	299,729	5.0	310,183	4.8	347,515	4.8
	전북	252,283	4.2	266,810	4.2	297,643	4.1
	전남	239,740	4.0	251,665	3.9	281,540	3.9
	경북	374,997	6.2	392,035	6.1	438,793	6.0
	경남	511,348	8.5	541,489	8.5	598,480	8.2
	제주	103,769	1.7	112,117	1.8	132,169	1.8
	합계	2,228,562	37.1	2,339,277	36.5	2,616,963	36.0
합계	6,002,721	100.0	6,401,148	100.00	7,273,752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세통계연감」

3. 세종시의 재정실태 및 지방소비세 현황

1) 세종시의 재정실태

- 다음 [표 3-19]는 2017년 기준 각 시·도별 및 세입재원별 예산규모(예산순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38조 7,701억 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29조 9,613억 원), 경상북도(15조 6,047억 원)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세종시는 총 총세입이 1조 1,957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 세입예산 총액에서 0.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순수 지방세입은 5,560억 원으로 0.8%의 비중으로 재원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작은 상황임

[표 3-19] 2017년도 시·도별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사·도별	계		세입재원별					
	금액	비중 (%)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지방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합계	1,931,532	100.0	711,891	223,362	337,384	440,673	22,757	195,465
서울	299,613	15.5	169,330	49,225	2,597	42,660	12,216	23,584
부산	107,917	5.6	45,789	11,748	8,583	28,530	4,444	8,822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생략								
세종	11,957	0.6	5,560	1,116	905	2,407	-	1,969
경기	387,701	20.1	177,471	55,204	24,305	70,247	640	59,834
경북	156,047	8.1	33,189	11,367	51,613	41,032	1,265	17,581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생략								
제주	42,859	2.2	12,090	2,904	11,849	12,657	-	3,358

주 1) 순계규모 기준(회계 및 자치단체 간 중복 계상분 공제, 기금 미포함), 2) 재원규모 = 시·도 본청(광역) + 시군구(기초)

자료 :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김홍주(2018b) 재인용

- 다음 [그림 3-4]에서 세종시의 세입구조(예산총계)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지방세가 5,560억 원(44.8%)으로 세외수입은 1,11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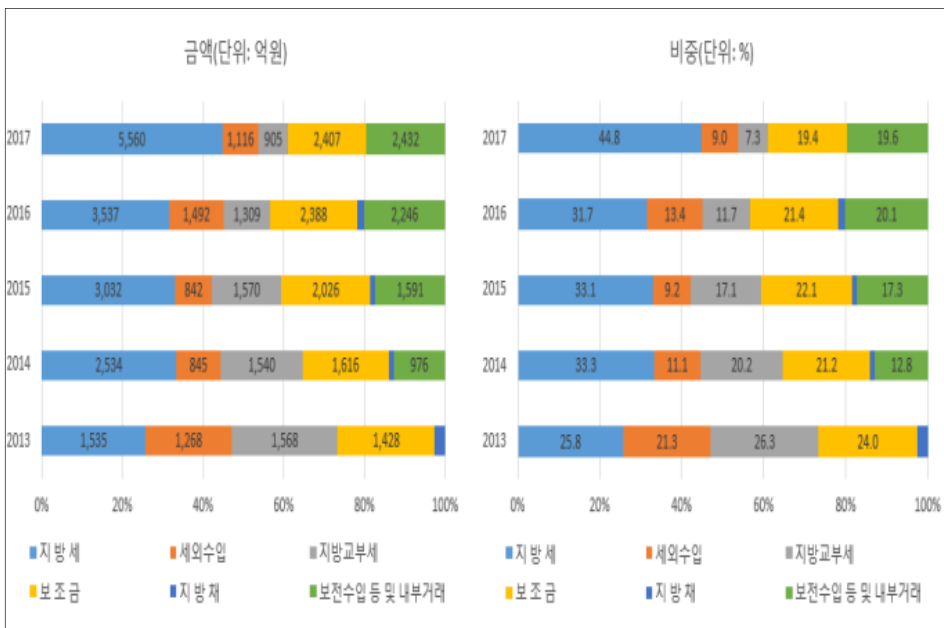
(9.0%)에 비해 훨씬 높은 규모(비중)를 차지하고 있음

- 즉, 세외수입의 규모와 비중이 상당히 열악함

○ 그리고 이전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905억 원(7.3%), 국고보조금은 2,407억 원(19.4%)을 차지함

- 지방세 규모(금액)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으나 국고보조사업 역시 규모(금액)가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음

(단위 : 억 원, %)



[그림 3-4] 세종시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예산)」

2) 지방세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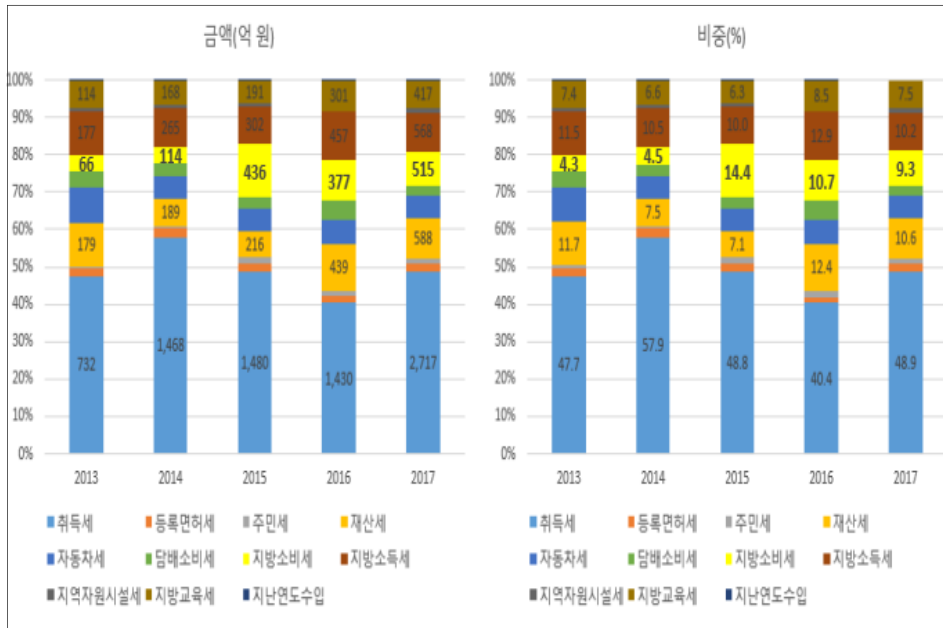
○ 다음 [그림 3-5]와 같이 세종시의 지방세입 구조를 중심으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재산과세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세입구조는 향후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특기할만한 것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소비와 소득과세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신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재정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세 확충에 있어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비율 확대는 세종시의 자원확충에 있어 매우 큰 기여할 뿐 아니라 재산과세 위주의 세입구조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억 원, %)



[그림 3-5] 세종시 지방세의 연도별 현황

자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예산)」

3) 지방소비세 규모 추이

- 다음[표 3-20]은 지방세통계연감, 통합재정개요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지방소비세 규모 추이를 분석하여 살펴보았음
- 지방세통계연감의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연평균 지방소비세 규모

의 증가율은 74.0%에 해당하며 통합재정개요의 자료에 따르면 50.8%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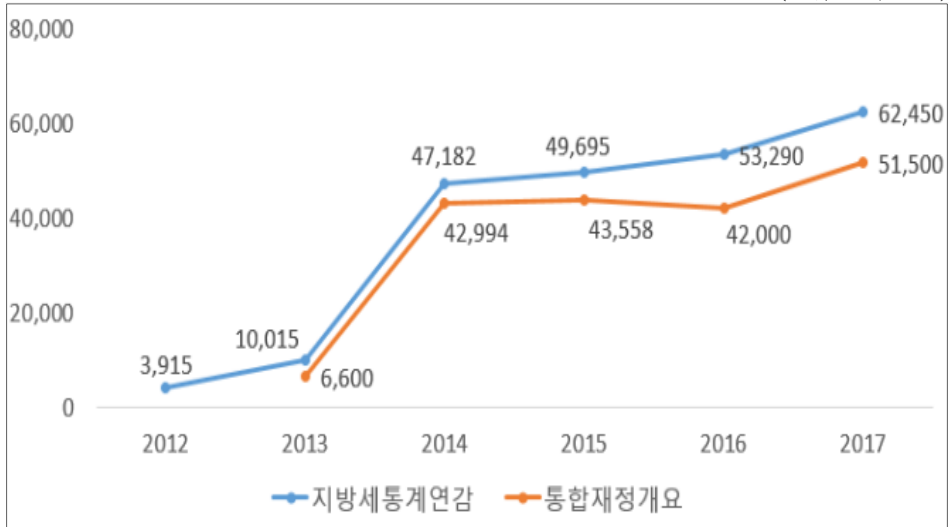
[표 3-20] 세종시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증가율 (%)
지방세통계연감	3,915	10,015	47,182	49,695	53,290	62,450	74.0
통합재정개요	-	6,600	42,994	43,558	42,000	51,500	50.8

○ 다음 [그림 3-6]은 지방세통계연감, 통합재정개요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지방소비세 액수의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단위 : 백만 원)



[그림 3-6] 세종시 규모 추이

제3절 지방소비세 관련 쟁점사항

1. 지방소비세 규모의 문제

-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해의 최종예산은 약2조 5천억 원에 달하게 되며 지방교부세 감소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액을 공제하면 약 2조원의 재정순증 효과가 있었음(김종순·홍근석·장경원, 2011)
- 국회예산정책처(2009)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과세를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으로 2010년에 감소된 지방재정의 규모는 약 8조 원으로 소비세 2조원을 제하고 나면 6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1%에 달하며, 이 중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보전금 6%를 제외한 5%는 2018년 기준 3조 원 초과해 현행 지방세 구조에서 지방소비세의 신장성은 양호한 추세를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이상훈, 2013)
-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출수요(사회복지비 등)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안정성 있고 신장성이 좋은 지방소비·소득세의 확대가 요구됨

2. 배분지표의 타당성 문제

-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소비지표로 되어 지역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거시지표로서 비거주자에 의한 지역 내 소비가 해당지역의 소비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 A지역에서 대표적인 관광명소의 경우 비거주자에 의한 소비가 많은 지역이지만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한 집계에서는 거주자원칙에 근거하여 지역 내 소비에 반영되지 못함
-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를 활발하게 해주었는데 B지역에서 소비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출행위는 C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 소비행위와 지출행위 간 괴리가 그 한계로 작용

- 따라서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소비지원칙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 토착사업매출 지표, 인구, 경제활동인구,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들이 활용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이 중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과 함께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배분지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 토착산업매출 지표가 있으며 특히, 토착산업매출 지표의 경우 지방세수와 연계시키는데 있어 지방소비세의 도입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논의됨(소비지 과세원칙 구현)
 - 그러나 각각의 지표 역시 한계점이 제시되는 바, 부가가치세 매출액 지표의 경우 생산지 과세의 원칙의 한계, 토착사업 매출액 역시 특정 분야의 소비양상을 대변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역의 소비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함(유태현, 2017)

3. 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 문제

- 우리나라의 지방세목의 선택과 세율의 결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세목으로서 과세자주권이 있기 보다는 교부금과 같은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임(최길수, 2010)

- 임성일(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을 각 시·도에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세 부가가치세액의 5%인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최종소비지수로 변경시키고 안분기준을 최종소비 × 지방소비세율로 하자는 대안이 제시됨
-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세율인상 및 인하 경쟁의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 규정과 소비통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합의를 통한 세율인상 및 인하를 제한하는 방법 외에 조세경쟁의 유발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정재근, 2012)
 - 이는 법률에 의한 과세자주권을 협약의 형식으로 바뀌서 제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에 세율결정권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율과 관련된 자주권 행사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있음

4. 수도권·비수도권 간 세수격차 문제

-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소비원칙에 근거한 배분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지역에 세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에서 많은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보임
 - 2017년도 기준 각 시·도별 지방소비세 세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경우 그 밖의 비수도권에 비해 소비세 비중이 20.81%로 나타나 그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보다 타당한 재정지표를 개발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김종순·홍근석·장경원, 2011)

5. 지역 간 가중치부여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지역별 지방소비세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배경은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집중된 소비지수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합리화 추진에 따른 이익배분 논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경제적 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한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이후 안분된 지방소비세액에 별도 35%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됨
- ※ 10년간 3조원 조성(연 3천억 원 출연목표로 역산결과 35% 산정)
- 지방소비세는 최종민간소비지출을 근거로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지역: 300)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타 지역(예, 제주도 등)을 비교할 때 2015년 기준으로 9배가량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3단계로 나눈 가중치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데 부정적 의견이 다수 존재함
 - 즉, 가중치를 설정하는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16개 시·도마다 재정력 편차가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지나친 단순화로 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김정완, 2010)
- 지방소비세를 시·도별 안분하는데 있어 권역별 가중치를 두는 것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으로 지방소비세가 이전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가중치 적용에 따른 시·도별 안분으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비가 증가하면 그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교부세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의 세입이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하기에 때문에 정반대의 배분구조를 가짐(정재근, 2012)

-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으로 지방소비세로 인해 심화되는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적 장치로 보는데 기인하나(유태현, 2009; 임성일, 2012; 김재훈, 2012),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수입으로 집계하지 않음에 그 차별성을 두고 있음(정재근, 2012)
- 지방소비세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는 바로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과 가중치에 관한 것으로 지방소비세가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음
 - 지금까지 논의된 지방소비세에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세입의 격차는 세출격차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서비스 수준 격차로 이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임
 -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서비스의 수준격차가 반드시 세출격차로 기인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김종순, 2001)
 - 반론으로 논의되는 것은 지역마다 인건비 등의 차이, 기후나 지리적 위치의 불리함,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비용차이(특정 주민들의 복지지출 수요 등), 재정을 보전하는 조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리해야한다는 근거, 지역 간 서비스 및 조세부담으로 인한 주민 이동은 지방의 혁신과 효율성추구를 가능케 한다는 주장(Tiebout, 1956),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자주재정권의 침해 등이 지적되고 있음

지역별 세수효과 시뮬레이션 및 안분기준 도출

- 제1절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및 지역 간 격차 분석
- 제2절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인상 및 격차 완화 효과 시뮬레이션
- 제3절 세종시의 주요 안분기준 타당성 검토

4장

제4장 지역별 세수효과 시뮬레이션 및 안분기준 도출

제1절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 및 지역 간 격차 분석

1. 시·도별 지방소비세 현행 5% 분 안분세액

1) 시·도별 안분세액: 가중치 배제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목으로 전환해 부가가치세의 11% 비율인 약 7.27조원에서 그 중 5%분인 약 4.05조원(2017년 기준)을 각 시·도별로 배분되도록 되어 있음

※ 6%분이 5%분 보다 전국 규모가 작은 이유는 5%분의 경우 전체가 광역자치단체 납입 금액이나, 6%분은 교육청 및 시·군 직접 납입분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 시·군 지방교부세(13.8%))

- 시·도별 재원의 이양을 위한 배분기준은 민간최종소비지출로서 안분기준 및 산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름
 - 행정안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로 배분할 때,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배분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때 적용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년도는 2014년도에 근거하고 있음
- 특히, 세종시의 경우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통계자료화 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세종시의 소비지수(행정안전부 자료)를 따로 환산하여 계산함
 - 이는 충북의 편입 분(충북소비지수에 세종시에 편입한 충북인구/충

북의 주민등록 인구를 곱한 값), 충남의 편입 분(충남소비지수에 세종시에 편입한 충남인구/충남의 주민등록 인구를 곱한 값)의 합을 통해 세종시의 소비지수를 산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해 볼 때, 세종시의 소비지수는 가중치가 포함된 2017년 기준 0.76으로 나타나며, 가중치가 배제된 값을 추정하면 0.41에 해당되기에 이를 역으로 수치화하면 약 3,047,006백만 원에 해당

○ 이렇게 도출된 수치(세종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추정치 포함)를 통해서 안분산식에(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제외한 금액) 2017년 지방소비세의 실제세입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해보면 서울이 664,203 백만 원(구성비 16.37%), 경기가 662,019(16.31%)로 서울과 경기만으로 32.68%에 해당되며 여기에 인천 150,479백만 원(3.71%)이 포함되면 총 36.39%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 부산(7.49%), 경남(6.93%), 대구(6.44%), 경북(6.01%) 등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종시는 0.51%의 비중을 보임

[표 4-1] 가중치 배제 시 지방소비세 현행 5%분 실제세입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기초자료(2014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민간최종 소비지출액	소비지수	세액 (A)	구성비 (%)(F)	출연 (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750,058,216	100.00	4,058,025	100.00	-754,326	754,326	100.00	4,058,025	100.00	0	0	
서울	180,766,238	24.10	977,984	24.10	-342,294	28,514	3.78	664,203	16.37	-7.73	-313,781	
부산	50,713,507	6.76	274,322	6.76		29,796	3.95	304,118	7.49	0.73	29,796	
대구	35,009,542	4.67	189,510	4.67		71,963	9.54	261,472	6.44	1.77	71,963	
인천	37,873,714	5.05	204,930	5.05	-71,726	17,274	2.29	150,479	3.71	-1.34	-54,452	
광주	21,750,152	2.90	117,683	2.90		91,952	12.19	209,635	5.17	2.27	91,952	
대전	22,758,614	3.03	122,958	3.03		62,760	8.32	185,718	4.58	1.55	62,760	
울산	17,375,704	2.32	94,146	2.32		56,876	7.54	151,022	3.72	1.40	56,876	
세종	3,047,006	0.41	16,638	0.41		4,073	0.54	20,711	0.51	0.10	4,073	
경기	179,713,671	23.96	972,303	23.96	-340,306	30,022	3.98	662,019	16.31	-7.65	-310,284	
강원	20,070,527	2.68	108,755	2.68		61,402	8.14	170,157	4.19	1.51	61,402	
충북	20,625,606	2.75	111,596	2.75		54,613	7.24	166,209	4.10	1.35	54,613	
충남	29,453,341	3.93	159,480	3.93		33,115	4.39	192,595	4.75	0.82	33,115	
전북	23,610,582	3.15	127,828	3.15		34,774	4.61	162,602	4.01	0.86	34,774	
전남	22,882,855	3.05	123,770	3.05		57,781	7.66	181,551	4.47	1.42	57,781	
경북	34,535,110	4.60	186,669	4.60		57,404	7.61	244,073	6.01	1.41	57,404	
경남	44,861,200	5.98	242,670	5.98		38,621	5.12	281,291	6.93	0.95	38,621	
제주	8,057,873	1.07	43,421	1.07		22,630	3.00	66,051	1.63	0.56	22,630	

2) 시·도별 안분세액: 현행 가중치 적용

- 다음 [표 4-2]는 현행 가중치가 적용된 2017년 기준 지방소비세의 세입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가중치가 적용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해서 각 시·도별 지방소비세를 안분한 결과 서울이 562,111백만 원으로 전체 구성비 13.85%에 해당되며, 경기도는 558,396백만 원으로 13.76%의 비율을 보임
 - 특히, 세종시의 경우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소비지수 비중이 0.70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안분액은 28,483백만 원에 해당됨
- 그리고 수도권외의 경제적 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 활용 목적으로 서울·인천·경기에 한해 가중치 적용 후 안분된 지방소비세액의 35%를 별도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2017년 기준 433,368 백만 원)하기 때문이 이를 제외한 실제 세입을 분석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액수를 제외한 실제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이 381,743백만 원으로 180,368백만 원이 감액되어 구성비가 9.41%, 경기도가 380,191백만 원으로 9.37%, 그리고 인천이 86,419백만 원으로 2.13%의 비율을 보이며 이전에 비해 그 비중이 줄어들었음
 - 이에 반해 경남(10.85%), 경북(8.75%), 부산(8.19%)의 비중은 이전에 비해 늘어났으며 세종시의 경우 30,824백만 원으로 0.76% 비중을 보여 이전에 비해 역시 그 규모와 비중이 늘어남

[표 4-2] 가중치 적용 시 지방소비세 한행 5%분 실제세임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4년) 소비지수	2017년 인분현황		지역상발전기금			실제세임규모			최종세임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4,058,025	100.00	-433,368	433,368	100.00	4,058,025	100.00	0	0	
서울	13.85	562,111	13.85	-196,739	16,371	3.78	381,743	9.41	-4.44	-180,368	
부산	7.77	315,275	7.77	-	17,121	3.95	332,396	8.19	0.42	17,121	
대구	5.36	217,594	5.36	-	41,338	9.54	258,932	6.38	1.02	41,338	
인천	2.90	117,687	2.90	-41,190	9,923	2.29	86,419	2.13	-0.77	-31,268	
광주	3.33	135,208	3.33	-	52,841	12.19	188,049	4.63	1.30	52,841	
대전	3.49	141,446	3.49	-	36,072	8.32	177,518	4.37	0.89	36,072	
울산	2.66	107,975	2.66	-	32,679	7.54	140,654	3.47	0.81	32,679	
세종	0.70	28,483	0.70	-	2,342	0.54	30,824	0.76	0.06	2,342	
경기	13.76	558,396	13.76	-195,439	17,233	3.98	380,191	9.37	-4.39	-178,206	
강원	4.61	187,084	4.61	-	35,256	8.14	222,339	5.48	0.87	35,256	
충북	4.72	191,431	4.72	-	31,354	7.24	222,785	5.49	0.77	31,354	
충남	6.08	246,752	6.08	-	19,030	4.39	265,783	6.55	0.47	19,030	
전북	5.42	220,066	5.42	-	19,994	4.61	240,060	5.92	0.49	19,994	
전남	5.26	213,315	5.26	-	33,192	7.66	246,507	6.07	0.82	33,192	
경북	7.93	321,945	7.93	-	32,987	7.61	354,932	8.75	0.81	32,987	
경남	10.31	418,187	10.31	-	22,197	5.12	440,384	10.85	0.55	22,197	
제주	1.85	75,071	1.85	-	12,988	3.00	88,058	2.17	0.32	12,988	

3) 시·도별 안분세액: 가중치 배제 전·후 비교

- 다음 [표 4-3]은 가중치 배제 전·후에 지방소비세의 실제세입규모를 시·도별로 비교한 것으로 서울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규모 및 비중이 크게 감소(16.37%→9.41%)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의 규모 및 비중(16.31%→9.37%)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광역도 및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시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세입규모와 비중이 가중치 배제 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였음
-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을 제외한 다수의 광역시·도에 비해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이 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가중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여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실제세입규모가 크게 줄었으며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4-3] 가중치 배제 전·후 지방소비세 실제세입규모 비교

구분	실제세입규모(가중치 배제)		실제세입규모(가중치 포함)	
	세액(백만 원)	구성비(%)	세액(백만 원)	구성비(%)
전국	4,058,025	100.00	4,058,025	100.00
서울	664,203	16.37	381,743	9.41
부산	304,118	7.49	332,396	8.19
대구	261,472	6.44	258,932	6.38
인천	150,479	3.71	86,419	2.13
광주	209,635	5.17	188,049	4.63
대전	185,718	4.58	177,518	4.37
울산	151,022	3.72	140,654	3.47
세종	20,711	0.51	30,824	0.76
경기	662,019	16.31	380,191	9.37
강원	170,157	4.19	222,339	5.48
충북	166,209	4.1	222,785	5.49
충남	192,595	4.75	265,783	6.55
전북	162,602	4.01	240,060	5.92
전남	181,551	4.47	246,507	6.07
경북	244,073	6.01	354,932	8.75
경남	281,291	6.93	440,384	10.85
제주	66,051	1.63	88,058	2.17

4) 시·도별 재원순증 종합효과

- 다음 [표 4-4]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증액은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시·도세 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시·도별 재원순증을 나타냈음
-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지방소비세의 세입효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의 감소, 시·도세 전출금 등이 포함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함
 - 그 이유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재원증립의 원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순증이 일어나지 못했으나, 현 정부는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의 비율 증가를 함께 논의하고 있어 이러한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지방소비세의 증가에 비해 그 규모 또한 크지 않음

[표 4-4] 시·도별 재원순증 효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도별 재원순증 효과					
	2017 지방소비세 (행정안전부)	시·도세 전출금	지역발전 상생기금 출연	지방교부세 감소	부동산 교부세개편	재원순증
서울	562,111	-56,211	-196,739	-2,363	-163,393	143,406
부산	315,275	-15,764	0	-19,028	-41,430	239,053
대구	217,594	-10,880	0	-20,807	-91,206	94,701
인천	117,687	-5,884	-41,190	-15,693	25,436	80,355
광주	135,208	-6,760	0	-13,309	-8,132	107,006
대전	141,446	-7,072	0	-13,067	-27,036	94,271
울산	107,975	-5,399	0	-5,773	6,400	103,203
세종	28,483	-10,254	0	-2,810	0	15,419
경기	558,396	-27,920	-195,439	-65,508	43,773	313,302
강원	187,084	-6,735	0	-87,177	44,303	137,475
충북	191,431	-6,892	0	-54,459	28,064	158,145
충남	246,752	-8,883	0	-68,492	17,240	186,618
전북	220,066	-7,922	0	-76,701	47,112	182,555
전남	213,315	-7,679	0	-108,856	74,367	171,146
경북	321,945	-11,590	0	-121,750	67,337	255,942
경남	418,187	-15,055	0	-81,568	-18,249	303,315
제주	75,071	-2,703	0	-23,402	-4,585	44,381
파견시·도	-	-	-	-	-	-
조합운영	-	-	-	-	-	-
전국	4,058,025	-213,602	-433,368	-780,764	0	2,630,291

2.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 분석

- 가중치가 포함된 이후 지역별 지방소비세의 안분액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평등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균형적 재정장치로 가중치가 포함된 지방소비세는 지니계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기존의 지방세 총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소극적 의미의 형평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역시 총액과 비슷하게 형평화 효과가 크지 않은 수치로 나타남

[표 4-5] 지방소비세의 형평화 효과분석

구분			불평등도	
총 세액 기준	지방소비세가 제외된 지방세	Gini Coefficient	0.684	
		Atkinson index	0.5	0.403
			1	0.602
			2	0.748
	Entropy index	0.920		
	5%분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지방세	Gini Coefficient	0.683	
		Atkinson index	0.5	0.402
			1	0.601
2			0.747	
Entropy index	0.918			
지역 주민 1인당 세액기준	지방소비세가 제외된 지방세	Gini Coefficient	0.120	
		Atkinson index	0.5	0.011
			1	0.022
			2	0.042
	Entropy index	0.022		
	5%분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지방세	Gini Coefficient	0.118	
		Atkinson index	0.5	0.011
			1	0.021
			2	0.041
		Entropy index	0.021	

제2절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인상 및 격차 완화 효과 시뮬레이션

1. 시·도별 지방소비세 15%분 안분세액: 가중치 배제

- 분권화 개헌과 함께 지방소비세 세율을 기존 5%(취득세 보전 분 6% 제외)에서 15%까지 인상시키려는 등 재정분권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늘어난 지방소비세 세율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 간 재정격차에 해소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 가중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학계 및 여타 지자체가 제시하는 배분기준 5가지(민간최종소비지출, 소매·음식·숙박·부동산 임대업 매출액을 지표로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소매업·숙박·음식업·운수업 등을 포함한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그리고 자체세입규모)를 수렴해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 안분기준에 대하여 공개된 자료가 있지 않아 2017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정산 산출내역(세종시 내부자료)을 활용하여 그 구성비(%)를 통해 안분하였음을 밝힘

1) 시·도별 안분세액: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 먼저, 배분기준을 현재 활용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해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현행 5%분의 지방소비세에서 세율을 15%로 올릴 경우 약 12.17조원의 지방소비세액으로 기존 약 4.05조원에 비해 매우 큰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됨
- 가중치가 배제된 상황에서 세수의 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서울

사이며 2,933,952백만 원으로 전체 소비세액의 24.10%에 해당되며 경기도 역시 2,916,908백만 원으로 23.96%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세액규모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이 외에 부산(6.76%), 경남(5.98%), 인천(5.05%), 대구(4.67%), 경북(4.60%)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49,914백만 원 0.41%로 매우 낮은 세수규모 및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35% 출연된 이후에 시·도별 실제 세수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의 세수규모 및 비중이 1,992,609백만 원, 16.37%로 가장 크며, 경기도가 1,986,057백만 원, 16.31%로 그 뒤로 높은 세수규모 및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출연된 이후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수도권 비중이 36.39%)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재정확충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인천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세종시의 경우 실제세입 규모가 62,134백만 원으로 예측되거나 전체 세입의 규모에 비교해 매우 적은 액수로 0.51%의 구성비를 이룰 것으로 예측됨

○ 특히, 가중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해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불평등도는 0.335로 나타남(지니계수)

[표 4-6] 가중치 배제 시 소비자수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 배제 (기초자료 2014년)		2017년 안분원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민간최종 소비지출액	소비 지수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I=D-A)	세액 (J=D-A)
전국	750,058,216	100.00	12,174,075	100.00	-2,262,978	2,262,978	100.00	12,174,075	100.00	0	0	0
서울	180,766,238	24.10	2,933,952	24.10	-1,026,883	85,541	3.78	1,992,609	16.37	-7.73	-941,343	
부산	50,713,507	6.76	822,967	6.76		89,388	3.95	912,355	7.49	0.73	89,388	
대구	35,009,542	4.67	568,529	4.67		215,888	9.54	784,417	6.44	1.77	215,888	
인천	37,873,714	5.05	614,791	5.05	-215,177	51,822	2.29	451,436	3.71	-1.34	-163,355	
광주	21,750,152	2.90	353,048	2.90		275,857	12.19	628,905	5.17	2.27	275,857	
대전	22,758,614	3.03	368,874	3.03		188,280	8.32	557,154	4.58	1.55	188,280	
울산	17,375,704	2.32	282,439	2.32		170,629	7.54	453,067	3.72	1.40	170,629	
세총	3,047,006	0.41	49,914	0.41		12,220	0.54	62,134	0.51	0.10	12,220	
경기	179,713,671	23.96	2,916,908	23.96	-1,020,918	90,067	3.98	1,986,057	16.31	-7.65	-930,851	
강원	20,070,527	2.68	326,265	2.68		184,206	8.14	510,472	4.19	1.51	184,206	
충북	20,625,606	2.75	334,787	2.75		163,840	7.24	498,627	4.10	1.35	163,840	
충남	29,453,341	3.93	478,441	3.93		99,345	4.39	577,786	4.75	0.82	99,345	
전북	23,610,582	3.15	383,483	3.15		104,323	4.61	487,807	4.01	0.86	104,323	
전남	22,882,835	3.05	371,309	3.05		173,344	7.66	544,653	4.47	1.42	173,344	
경북	34,535,110	4.60	560,007	4.60		172,213	7.61	732,220	6.01	1.41	172,213	
경남	44,861,200	5.98	728,010	5.98		115,864	5.12	843,874	6.93	0.95	115,864	
제주	8,057,873	1.07	130,263	1.07		67,889	3.00	198,152	1.63	0.56	67,889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1	2							
	0.242	0.335	0.106	0.215	0.468							

2) 시·도별 안분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액(과세표준)

- 배분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2,028,091백만 원, 16.66%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970,513백만 원, 16.19%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남(6.74%), 부산(6.72%), 대구(6.45%), 경북(6.08%)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58,578백만 원 0.48%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하여 안분한 세액보다 세수규모 및 비중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세액 비중은 0.51%)
-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될 시 수도권의 집중도가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비해서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함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소비세 비중이 36.60%로 기존의 36.39%에 비해 다소 증가해 수도권 집중이 조금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과세표준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326(지니계수) 오히려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불평등도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음 알 수 있음
 - 이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다소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 간의 불평등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결과에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됨

[표 4-7] 가중치 배제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배제 (기초자료 2016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부가가치세 매출액	과세 표준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247,508,736	100.00	12,174,075	100.00	-2,275,819	2,275,819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58,943,291	23.81	2,899,211	23.81	-1,014,724	86,026	3.78	1,970,513	16.19	-7.63	-928,698	
부산	14,811,802	5.98	728,540	5.98		89,895	3.95	818,435	6.72	0.74	89,895	
대구	11,542,203	4.66	567,720	4.66		217,113	9.54	784,833	6.45	1.78	217,113	
인천	12,652,661	5.11	622,339	5.11	-217,819	52,116	2.29	456,637	3.75	-1.36	-165,703	
광주	6,031,273	2.44	296,657	2.44		277,422	12.19	574,079	4.72	2.28	277,422	
대전	6,662,748	2.69	327,717	2.69		189,348	8.32	517,065	4.25	1.56	189,348	
울산	5,261,785	2.13	258,809	2.13		171,597	7.54	430,405	3.54	1.41	171,597	
세총	941,074	0.38	46,288	0.38		12,289	0.54	58,578	0.48	0.10	12,289	
경기	60,601,869	24.48	2,980,791	24.48	-1,043,277	90,578	3.98	2,028,091	16.66	-7.83	-952,699	
강원	7,502,279	3.03	369,010	3.03		185,252	8.14	554,262	4.55	1.52	185,252	
충북	7,338,029	2.96	360,932	2.96		164,769	7.24	525,701	4.32	1.35	164,769	
충남	10,207,539	4.12	502,073	4.12		99,908	4.39	601,981	4.94	0.82	99,908	
전북	7,785,619	3.15	382,947	3.15		104,915	4.61	487,862	4.01	0.86	104,915	
전남	6,904,637	2.79	339,615	2.79		174,328	7.66	513,942	4.22	1.43	174,328	
경북	11,534,420	4.66	567,337	4.66		173,190	7.61	740,527	6.08	1.42	173,190	
경남	14,304,425	5.78	703,584	5.78		116,522	5.12	820,106	6.74	0.96	116,522	
제주	4,483,082	1.81	220,507	1.81		68,275	3.00	288,781	2.37	0.56	68,275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231	0.326	0.5	1	2							
			0.102	0.206	0.462							

3) 시·도별 안분세액: 토착산업 매출액(토착산업지표)

- 배분기준을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2,330,885백만 원, 19.15%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835,974백만 원, 15.08%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부산(7.13%), 경남(6.41%), 대구(5.93%), 경북(5.72%)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49,503백만 원 0.41%로 역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하여 안분한 세액보다 세수규모 및 비중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될 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했을 때와 비교해 수도권 집중도가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비해서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함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소비세 비중이 37.90%로 부가가치세 매출액 36.60%, 민간최종소비지출 36.39%에 비해 증가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이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339(지니계수)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근거한 불평등도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8] 가중치 배제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배제 (기초자료 2016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토착산업 매출액	토착산업 지표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495,196,895	100.00	12,174,075	100.00	-2,356,964	2,356,964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40,289,052	28.33	3,448,910	28.33	-1,207,118	89,093	3.78	2,330,885	19.15	-9.18	-1,118,025
부산	31,528,822	6.37	775,114	6.37	-	93,100	3.95	868,214	7.13	0.76	93,100
대구	20,205,731	4.08	496,744	4.08	-	224,854	9.54	721,598	5.93	1.85	224,854
인천	24,609,806	4.97	605,015	4.97	-211,755	53,974	2.29	447,234	3.67	-1.30	-157,781
광주	12,875,346	2.60	316,532	2.60	-	287,314	12.19	603,845	4.96	2.36	287,314
대전	13,007,589	2.63	319,783	2.63	-	196,099	8.32	515,882	4.24	1.61	196,099
울산	10,094,025	2.04	248,155	2.04	-	177,715	7.54	425,870	3.50	1.46	177,715
세중	1,495,873	0.30	36,775	0.30	-	12,728	0.54	49,503	0.41	0.10	12,728
경기	109,023,040	22.02	2,680,256	22.02	-938,090	93,807	3.98	1,835,974	15.08	-6.94	-844,283
강원	14,554,184	2.94	357,805	2.94	-	191,857	8.14	549,661	4.52	1.58	191,857
충북	13,291,805	2.68	326,770	2.68	-	170,644	7.24	497,414	4.09	1.40	170,644
충남	18,152,346	3.67	446,263	3.67	-	103,471	4.39	549,734	4.52	0.85	103,471
전북	14,645,942	2.96	360,060	2.96	-	108,656	4.61	468,716	3.85	0.89	108,656
전남	14,173,261	2.86	348,440	2.86	-	180,543	7.66	528,983	4.35	1.48	180,543
경북	21,011,139	4.24	516,544	4.24	-	179,365	7.61	695,909	5.72	1.47	179,365
경남	26,823,724	5.42	659,443	5.42	-	120,677	5.12	780,119	6.41	0.99	120,677
제주	9,415,210	1.90	231,466	1.90	-	70,709	3.00	302,175	2.48	0.58	70,709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251	0.339	0.5	1	0.222	2	0.501				

4) 시·도별 안분세액: 인구규모(인구비율)

-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2,051,583백만 원, 16.85%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586,359백만 원, 13.03%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남(7.42%), 부산(7.39%), 경북(6.52%), 대구(6.44%)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77,268백만 원, 0.63%로 다른 지표에 근거하여 안분한 세액보다 세수규모 및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될 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매출액 등 다른 배분기준으로 안분했을 때와 비교해 수도권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소비세 비중이 33.98%로 부가가치세 매출액 36.60%, 민간최종소비지출 36.39%, 토착산업 매출액 37.90%에 비해 증가해 수도권 집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이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312(지니계수)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에 근거한 불평등도보다 더욱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9] 가중치 배제 시 인구비율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배제 (기초자료 2017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인구규모	인구 비율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B=D-A)
전국	51,778,544	100.00	12,174,075	100.00	-2,113,231	2,113,231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9,857,426	19.04	2,317,660	19.04	-811,181	79,880	3.78	1,586,359	13.03	-6.01	-731,301
부산	3,470,653	6.70	816,013	6.70		83,473	3.95	899,486	7.39	0.69	83,473
대구	2,475,231	4.78	581,972	4.78		201,602	9.54	783,574	6.44	1.66	201,602
인천	2,948,542	5.69	693,256	5.69	-242,640	48,393	2.29	499,009	4.10	-1.60	-194,247
광주	1,463,770	2.83	344,159	2.83		257,603	12.19	601,762	4.94	2.12	257,603
대전	1,502,227	2.90	353,201	2.90		175,821	8.32	529,022	4.35	1.44	175,821
울산	1,165,132	2.25	273,944	2.25		159,338	7.54	433,281	3.56	1.31	159,338
세총	280,100	0.54	65,857	0.54		11,411	0.54	77,268	0.63	0.09	11,411
경기	12,873,895	24.86	3,026,886	24.86	-1,059,410	84,107	3.98	2,051,583	16.85	-8.01	-975,304
강원	1,550,142	2.99	364,467	2.99		172,017	8.14	536,483	4.41	1.41	172,017
충북	1,594,432	3.08	374,880	3.08		152,998	7.24	527,878	4.34	1.26	152,998
충남	2,116,770	4.09	497,691	4.09		92,771	4.39	590,462	4.85	0.76	92,771
전북	1,854,607	3.58	436,052	3.58		97,420	4.61	533,472	4.38	0.80	97,420
전남	1,896,424	3.66	445,884	3.66		161,873	7.66	607,757	4.99	1.33	161,873
경북	2,691,706	5.20	632,869	5.20		160,817	7.61	793,686	6.52	1.32	160,817
경남	3,380,404	6.53	794,794	6.53		108,197	5.12	902,992	7.42	0.89	108,197
제주	657,083	1.27	154,492	1.27		63,397	3.00	217,889	1.79	0.52	63,397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206	0.312	0.5	1	2						
			0.091	0.186	0.410						

5) 시·도별 안분세액: 자체세입규모(자체세입비중)

-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2,173,676백만 원, 17.85%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937,413백만 원, 15.91%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남(6.98%), 경북(6.38%), 부산(6.35%), 대구(5.48%)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90,675백만 원 0.74%로 다른 배분지표들과 비교해서 가장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자체세입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될 시 수도권 집중도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매출액 등 다른 배분기준으로 안분했을 때와 비교해 수도권의 집중도가 가장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소비세 비중이 38.28%로 부가가치세 매출액 36.60%, 민간최종소비지출 36.39%, 토착산업 매출액 37.90%, 인구규모 33.98%에 비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음으로 예측됨
- 자체세입규모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333(지니계수)로 토착산업 매출액에 근거한 불평등도를 제외한 다른 배분지표의 불평등도 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10] 가중치 배제 시 자체세임비중에 따른 실제세임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배제 (기초자료 2017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임규모		최종세임증감		
	자체세임 규모	자체세임 비중	세액(A)	구세비 (%F)	출연(B)	채분배(C)	구세비 (%)	세액 (D=A+B+C)	구세비 (%G)	구세비 (H=G-F)	세액 (I=D-A)	
전국	98,802	100.00	12,174,075	100.00	-2,381,223	2,381,223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23,066	23.35	2,842,158	23.35	-994,755	90,010	3.78	1,937,413	15.91	-7.43	-904,745	
부산	5,507	5.57	678,578	5.57	-	94,058	3.95	772,636	6.35	0.77	94,058	
대구	3,571	3.61	439,947	3.61	-	227,169	9.54	667,116	5.48	1.87	227,169	
인천	6,193	6.27	763,024	6.27	-267,058	54,530	2.29	550,496	4.52	-1.75	-212,528	
광주	2,087	2.11	257,184	2.11	-	290,271	12.19	547,456	4.50	2.38	290,271	
대전	2,019	2.04	248,811	2.04	-	198,118	8.32	446,928	3.67	1.63	198,118	
울산	2,301	2.33	283,504	2.33	-	179,544	7.54	463,048	3.80	1.47	179,544	
세총	632	0.64	77,817	0.64	-	12,859	0.54	90,675	0.74	0.11	12,859	
경기	25,957	26.27	3,198,313	26.27	-1,119,410	94,773	3.98	2,173,676	17.85	-8.42	-1,024,637	
강원	2,822	2.86	347,698	2.86	-	193,832	8.14	541,530	4.45	1.59	193,832	
충북	2,611	2.64	321,756	2.64	-	172,401	7.24	494,157	4.06	1.42	172,401	
충남	4,025	4.07	495,904	4.07	-	104,536	4.39	600,440	4.93	0.86	104,536	
전북	2,542	2.57	313,235	2.57	-	109,774	4.61	423,009	3.47	0.90	109,774	
전남	3,085	3.12	380,182	3.12	-	182,402	7.66	562,584	4.62	1.50	182,402	
경북	4,832	4.89	595,419	4.89	-	181,211	7.61	776,630	6.38	1.49	181,211	
경남	5,906	5.98	727,661	5.98	-	121,919	5.12	849,580	6.98	1.00	121,919	
제주	1,647	1.67	202,884	1.67	-	71,437	3.00	274,320	2.25	0.59	71,437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1								2
			0.333	0.102	0.195							
총액	0.217	0.333	0.102	0.195								0.385

6)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세입 종합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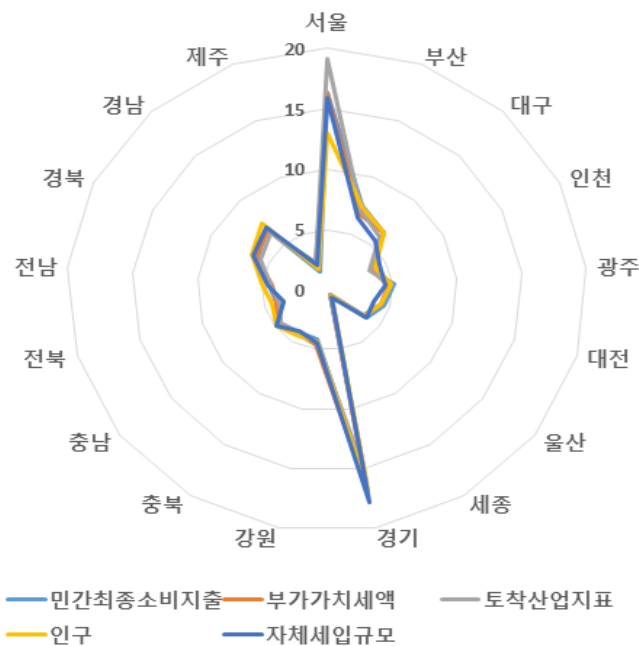
- 다음 [표 4-11]은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의 증가정도와 지역 간 격차의 완화정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가중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세종시의 세수 증가는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구규모,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기준으로 배분했을 시 세입증가가 높게 나타나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할 경우 불평등도가 0.333으로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할 경우 불평등도(지니계수: 0.312)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대체할만한 배분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경우 소비세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토착산업 매출액 역시 소비지표로서 대표성은 높으나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지역 간 불평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다음 [그림 4-1]은 각각의 배분기준에 따라 시·도별 안분액을 보여주고 있음

[표 4-11]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총합비교(가중치 배제)

(단위 : 백만 원)

구분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규모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전국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서울	1,992,609	16.37	1,970,513	16.19	2,330,885	19.15	1,586,359	13.03	1,937,413	15.91
부산	912,355	7.49	818,435	6.72	868,214	7.13	899,486	7.39	772,636	6.35
대구	784,417	6.44	784,833	6.45	721,598	5.93	783,574	6.44	667,116	5.48
인천	451,436	3.71	456,637	3.75	447,234	3.67	499,009	4.10	550,496	4.52
광주	628,905	5.17	574,079	4.72	603,845	4.96	601,762	4.94	547,456	4.50
대전	557,154	4.58	517,065	4.25	515,882	4.24	529,022	4.35	446,928	3.67
울산	453,067	3.72	430,405	3.54	425,870	3.50	433,281	3.56	463,048	3.80
세종	62,134	0.51	58,578	0.48	49,503	0.41	77,268	0.63	90,675	0.74
경기	1,986,057	16.31	2,028,091	16.66	1,835,974	15.08	2,051,583	16.85	2,173,676	17.85
강원	510,472	4.19	554,262	4.55	549,661	4.52	536,483	4.41	541,530	4.45
충북	498,627	4.1	525,701	4.32	497,414	4.09	527,878	4.34	494,157	4.06
충남	577,786	4.75	601,981	4.94	549,734	4.52	590,462	4.85	600,440	4.93
전북	487,807	4.01	487,862	4.01	468,716	3.85	533,472	4.38	423,009	3.47
전남	544,653	4.47	513,942	4.22	528,983	4.35	607,757	4.99	562,584	4.62
경북	732,220	6.01	740,527	6.08	695,909	5.72	793,686	6.52	776,630	6.38
경남	843,874	6.93	820,106	6.74	780,119	6.41	902,992	7.42	849,580	6.98
제주	198,152	1.63	288,781	2.37	302,175	2.48	217,889	1.79	274,320	2.25
총액	0.335		0.326		0.339		0.312		0.333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 각각의 배분지표를 살펴본 결과, 분포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고, 모두 수도권(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즉, 가중치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지역 간 균형적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음
- 제언: 가중치 배제 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배분기준 도출 고려
 - 가중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세종시의 경우 세입증가(효율성)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이 높은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이 합당함



[그림 4-1] 가중치 배제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2. 시·도별 지방소비세 15%분 안분세액: 가중치 포함

1) 시·도별 안분세액: 현행 가중치

- 현행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가중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00%, 광역시 200%, 그리고 광역도 300%를 적용,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되어 왔으며 노동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기인해 300%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음

※ 현행 가중치는 대상지역 세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불변함

[표 4-12]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현행)

지역별	대 상(불변)	가중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00
수도권 외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0
수도권 외 도 (세종시 포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300

(1)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 배분기준을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기존의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상남도가 1,321,708백만 원, 10.86%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145,111백만 원, 9.41%, 경기도가 1,140,590백만 원, 9.37%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북(8.74%), 부산(8.19%), 충남(6.55%), 대구(6.38%) 순

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92,239백만 원 0.76%로 가중치 배제 전과 비교해 더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집중도는 20.91%로 가중치 배제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가중치 배제 전 수도권 집중도 36.39%)

○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세입배분의 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경상북도, 부산시 등과 비교해 더 크거나, 비슷한 정도(인천시의 경우)의 크기에 해당하는데 경상북도, 부산시에 비교해 지방소비세의 규모 및 비중이 작음

- 즉, 세수가 감소하는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는 타 시·도에 비해 소비지수가 현격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가중치 적용에 의해 오히려 세수역전 현상이 일어나 세수배분이 왜곡됨

○ 그러나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64(지니계수)로 가중치가 배제된 지역별 안분에 따른 불평등도 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13] 현행 가중치 적용 시 소비지수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4년) 소비지수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300,009	1,300,009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3.85	1,686,109	13.85	-590,138	49,140	3.78	1,145,111	9.41	-4.44	-540,998	
부산	7.77	945,926	7.77	-	51,350	3.95	997,276	8.19	0.42	51,350	
대구	5.36	652,530	5.36	-	124,021	9.54	776,551	6.38	1.02	124,021	
인천	2.90	353,048	2.90	-123,567	29,770	2.29	259,252	2.13	-0.77	-93,797	
광주	3.33	405,397	3.33	-	158,471	12.19	563,868	4.63	1.30	158,471	
대전	3.49	424,875	3.49	-	108,161	8.32	533,036	4.38	0.89	108,161	
울산	2.66	323,830	2.66	-	98,021	7.54	421,851	3.47	0.81	98,021	
세종	0.70	85,219	0.70	-	7,020	0.54	92,239	0.76	0.06	7,020	
경기	13.76	1,675,153	13.76	-586,303	51,740	3.98	1,140,590	9.37	-4.39	-534,563	
강원	4.61	561,225	4.61	-	105,821	8.14	667,046	5.48	0.87	105,821	
충북	4.72	574,616	4.72	-	94,121	7.24	668,737	5.49	0.77	94,121	
충남	6.08	740,184	6.08	-	57,070	4.39	797,254	6.55	0.47	57,070	
전북	5.42	659,835	5.42	-	59,930	4.61	719,765	5.91	0.49	59,930	
전남	5.26	640,356	5.26	-	99,581	7.66	739,937	6.08	0.82	99,581	
경북	7.93	965,404	7.93	-	98,931	7.61	1,064,335	8.74	0.81	98,931	
경남	10.31	1,255,147	10.31	-	66,560	5.12	1,321,708	10.86	0.55	66,560	
제주	1.85	225,220	1.85	-	39,000	3.00	264,221	2.17	0.32	39,000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2	0.362				
			0.5	1	0.150						
	0.162	0.264	0.067	0.150							

(2) 부가가치세 매출액(과세표준)

- 배분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현행의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상남도가 1,270,731백만 원, 10.44%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157,092백만 원, 9.50%, 서울시가 1,124,241백만 원, 9.23%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북(8.79%), 충남(7.53%), 부산(7.25%), 대구(6.34%)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86,238백만 원 0.71%로 가중치 배제 전과 비교해 더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리고 수도권외의 집중도는 20.87%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배분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집중도가 예측됨(민간최종소비지출 근거 20.91%)
-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근거로 할 경우 역시 수도권의 세입비중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에 비해 세수확충 효과가 매우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음이 예측되며 이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시·도별 안분의 실제 세입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음이 예측됨
-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56(지니계수)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불평등도 예측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표 4-14] 현행 가중치 적용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과세표준 (2016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298,428	1,298,428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3.59	1,654,093	13.59	-578,933	49,081	3.78	1,124,241	9.23	-4.35	-529,852	
부산	6.83	831,311	6.83	-	51,288	3.95	882,599	7.25	0.42	51,288	
대구	5.32	647,805	5.32	-	123,870	9.54	771,675	6.34	1.02	123,870	
인천	2.92	355,065	2.92	-124,273	29,734	2.29	260,526	2.14	-0.78	-94,539	
광주	2.78	338,505	2.78	-	158,278	12.19	496,783	4.08	1.30	158,278	
대전	3.07	373,946	3.07	-	108,029	8.32	481,975	3.96	0.89	108,029	
울산	2.43	295,317	2.43	-	97,901	7.54	393,219	3.23	0.80	97,901	
세종	0.65	79,227	0.65	-	7,012	0.54	86,238	0.71	0.06	7,012	
경기	13.97	1,700,637	13.97	-595,223	51,677	3.98	1,157,092	9.50	-4.46	-543,546	
강원	5.19	631,597	5.19	-	105,692	8.14	737,289	6.06	0.87	105,692	
충북	5.07	617,769	5.07	-	94,006	7.24	711,776	5.85	0.77	94,006	
충남	7.06	859,346	7.06	-	57,001	4.39	916,347	7.53	0.47	57,001	
전북	5.38	655,451	5.38	-	59,858	4.61	715,308	5.88	0.49	59,858	
전남	4.77	581,283	4.77	-	99,460	7.66	680,743	5.59	0.82	99,460	
경북	7.98	971,052	7.98	-	98,810	7.61	1,069,863	8.79	0.81	98,810	
경남	9.89	1,204,252	9.89	-	66,480	5.12	1,270,731	10.44	0.55	66,480	
제주	3.10	377,419	3.10	-	38,953	3.00	416,372	3.42	0.32	38,953	
불평등도	Entropy 0.154	Gini 0.256	Atkinson			3.063	0.143	0.360	-	-	-
			0.5	1	2						

(3) 토착산업 매출액(토착산업지표)

- 배분기준을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현행의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1,357,881백만 원, 11.15%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가 1,222,797백만 원, 10.04%, 경기도가 1,069,566백만 원, 8.79%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북(8.27%), 부산(7.86%), 충남(6.90%), 강원(6.05%)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71,686백만 원 0.59%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비교해 더 작은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리고 수도권의 집중도는 22.08%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될 때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집중도가 예측됨
- 토착산업 매출액을 근거로 할 경우 역시 수도권의 세입비중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에 비해 세수확충 효과가 매우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근거한 시·도별 안분의 실제 세입과 비슷한 경향이 예측됨
-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59(지니계수)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근거한 불평등도 예측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15] 현행 가중치 적용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6년) 토착산업 지표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B=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373,073	1,373,073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6.50	2,009,198	16.50	-703,219	51,902	3.78	1,357,881	11.15	-5.35	-651,317	
부산	7.42	903,102	7.42	-	54,236	3.95	957,338	7.86	0.45	54,236	
대구	4.75	578,767	4.75	-	130,991	9.54	709,758	5.83	1.08	130,991	
인천	2.90	352,458	2.90	-123,360	31,443	2.29	260,541	2.14	-0.76	-91,917	
광주	3.03	368,797	3.03	-	167,378	12.19	536,175	4.40	1.37	167,378	
대전	3.06	372,585	3.06	-	114,240	8.32	486,825	4.00	0.94	114,240	
울산	2.37	289,130	2.37	-	103,530	7.54	392,660	3.23	0.85	103,530	
세총	0.53	64,271	0.53	-	7,415	0.54	71,686	0.59	0.06	7,415	
경기	12.83	1,561,411	12.83	-546,494	54,648	3.98	1,069,566	8.79	-4.04	-491,846	
강원	5.14	625,328	5.14	-	111,768	8.14	737,096	6.05	0.92	111,768	
충북	4.69	571,090	4.69	-	99,411	7.24	670,500	5.51	0.82	99,411	
충남	6.41	779,925	6.41	-	60,278	4.39	840,203	6.90	0.50	60,278	
전북	5.17	629,271	5.17	-	63,299	4.61	692,569	5.69	0.52	63,299	
전남	5.00	608,962	5.00	-	105,177	7.66	714,139	5.87	0.86	105,177	
경북	7.42	902,755	7.42	-	104,491	7.61	1,007,246	8.27	0.86	104,491	
경남	9.47	1,152,496	9.47	-	70,301	5.12	1,222,797	10.04	0.58	70,301	
제주	3.32	404,530	3.32	-	41,192	3.00	445,722	3.66	0.34	41,192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1	2							
	0.163	0.259	0.066	0.151	0.396						

(4) 인구규모(인구비율)

-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를 기준(현행의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상남도가 1,374,480백만 원, 11.29%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상북도가 1,135,625백만 원, 9.33%, 경기도가 1,131,302백만 원, 9.29%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부산(7.77%), 서울(7.19%), 충남(7.18%), 전남(6.79%)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115,238백만 원, 0.95%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과 비교해 상당히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특히,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외의 집중도는 18.74%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그리고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될 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집중도가 나타났음이 예측되며 이에 반해 경상도(경상남·북도)의 집중도가 20.62%로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높게 나타남
- 인구규모를 근거로 할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세수가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른 배분지표에 비해 세수배분의 왜곡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60(지니계수)로 민간소비지출에 근거한 불평등도 예측결과를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16] 현행 가중치 적용 시 인구비율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7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인구비율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165.296	1,165.296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0.50	1,278.024	10.50	-447.308	44.048	3.78	874.764	7.19	-3.31	-403.260		
부산	7.39	899.947	7.39		46.029	3.95	945.976	7.77	0.38	46.029		
대구	5.27	641.832	5.27		111.169	9.54	753.001	6.19	0.91	111.169		
인천	3.14	382.281	3.14	-133.798	26.685	2.29	275.168	2.26	-0.88	-107.113		
광주	3.12	379.558	3.12		142.050	12.19	521.608	4.28	1.17	142.050		
대전	3.20	389.530	3.20		96.953	8.32	486.483	4.00	0.80	96.953		
울산	2.48	302.121	2.48		87.863	7.54	389.984	3.20	0.72	87.863		
세종	0.89	108,946	0.89		6,293	0.54	115,238	0.95	0.05	6,293		
경기	13.71	1,669,112	13.71	-584,189	46,379	3.98	1,131,302	9.29	-4.42	-537,810		
강원	4.95	602,932	4.95		94,855	8.14	697,787	5.73	0.78	94,855		
충북	5.09	620,159	5.09		84,367	7.24	704,526	5.79	0.69	84,367		
충남	6.76	823,323	6.76		51,156	4.39	874,480	7.18	0.42	51,156		
전북	5.93	721,354	5.93		53,720	4.61	775,074	6.37	0.44	53,720		
전남	6.06	737,619	6.06		89,262	7.66	826,881	6.79	0.73	89,262		
경북	8.60	1,046,946	8.60		88,679	7.61	1,135,625	9.33	0.73	88,679		
경남	10.80	1,314,817	10.80		59,663	5.12	1,374,480	11.29	0.49	59,663		
제주	2.10	255,574	2.10		34,959	3.00	290,533	2.39	0.29	34,959		
불평등도	Entropy 0.148	Gini 0.260	Atkinson			2 0.318						
			1 0.138	2 0.318								

(5) 자체세입 규모(자체세입규모 비중)

-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기준(현행의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상남도가 1,335,735백만 원, 10.97%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259,686백만 원, 10.35%, 경상북도가 1,140,185백만 원, 9.37%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이 예측됨
 - 이 외에 서울(9.22%), 충남(7.58%), 부산(6.91%), 전남(6.30%)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142,740백만 원, 1.17%로 다른 배분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자체세입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의 집중도는 22.19%로 다른 모든 배분지표를 기준으로 배분될 때와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집중도가 예측됨
- 자체세입규모를 근거로 할 경우 역시 경상도의 세수확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시·도별 불평등도는 0.268(지니계수)로 다른 모든 배분지표에 근거한 불평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17] 현행 기준치 적용 시 자체세입비중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자체세입 비중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379,964	1,379,964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3.53	1,647,084	13.53	-576,479	52,163	3.78	1,122,767	9.22	-4.31	-524,317	
부산	6.46	786,498	6.46		54,509	3.95	841,006	6.91	0.45	54,509	
대구	4.19	509,915	4.19		131,649	9.54	641,564	5.27	1.08	131,649	
인천	3.63	442,187	3.63	-154,765	31,601	2.29	319,023	2.62	-1.01	-123,164	
광주	2.45	298,086	2.45		168,218	12.19	466,304	3.83	1.38	168,218	
대전	2.37	288,381	2.37		114,813	8.32	403,194	3.31	0.94	114,813	
울산	2.70	328,592	2.70		104,049	7.54	432,641	3.55	0.85	104,049	
세종	1.11	135,289	1.11		7,452	0.54	142,740	1.17	0.06	7,452	
경기	15.22	1,853,483	15.22	-648,719	54,923	3.98	1,259,686	10.35	-4.88	-593,796	
강원	4.97	604,493	4.97		112,329	8.14	716,822	5.89	0.92	112,329	
충북	4.59	559,391	4.59		99,909	7.24	659,300	5.42	0.82	99,909	
충남	7.08	862,157	7.08		60,580	4.39	922,737	7.58	0.50	60,580	
전북	4.47	544,577	4.47		63,616	4.61	608,193	5.00	0.52	63,616	
전남	5.43	660,968	5.43		105,705	7.66	766,673	6.30	0.87	105,705	
경북	8.50	1,035,170	8.50		105,015	7.61	1,140,185	9.37	0.86	105,015	
경남	10.39	1,265,080	10.39		70,654	5.12	1,335,735	10.97	0.58	70,654	
제주	2.90	352,725	2.90		41,399	3.00	394,124	3.24	0.34	41,399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268	0.060	0.126	0.272						

(6) 현행 가중치 적용에 따른 배분지표별 종합비교

- 다음 [표 4-18]은 현행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정리하였음
- 현행 가중치가 적용(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수도권 외 도 300)된 상태에서 시물레이션 실시 결과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종시의 세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구규모,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배분했을 시 세입증가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할 경우 불평등도가 0.268로 형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수의 집중도가 경상도(경상남북도)에 집중되어 세수 역전현상이 일어나 세수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세종시의 경우 세수확충 차원에서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안분액 규모 및 비중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김종순·홍근석·장경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배분기준은 민간최종소비지출로 하되, 가중치를 중심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는 권역별 구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기 보다는 재정력,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함
- 다음 [그림 4-2]는 각각의 배분기준에 따른 시·도별 안분액을 보여 주고 있음

[표 4-18]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종합비교(현행의 기준치 적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규모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전국	12,192,397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서울	1,145,804	9.40	1,124,241	9.23	1,357,881	11.15	874,764	7.19	1,122,767	9.22
부산	998,000	8.19	882,599	7.25	957,338	7.86	945,976	7.77	841,006	6.91
대구	778,299	6.38	771,675	6.34	709,758	5.83	753,001	6.19	641,564	5.27
인천	259,671	2.13	260,526	2.14	260,541	2.14	275,168	2.26	319,023	2.62
광주	566,101	4.64	496,783	4.08	536,175	4.40	521,608	4.28	466,304	3.83
대전	534,560	4.38	481,975	3.96	486,825	4.00	486,483	4.00	403,194	3.31
울산	423,233	3.47	393,219	3.23	392,660	3.23	389,984	3.20	432,641	3.55
세총	92,338	0.76	86,238	0.71	71,686	0.59	115,238	0.95	142,740	1.17
경기	1,141,319	9.36	1,157,092	9.50	1,069,566	8.79	1,131,302	9.29	1,259,686	10.35
강원	668,537	5.48	737,289	6.06	737,096	6.05	697,787	5.73	716,822	5.89
충북	670,063	5.50	711,776	5.85	670,500	5.51	704,526	5.79	659,300	5.42
충남	798,058	6.55	916,347	7.53	840,203	6.90	874,480	7.18	922,737	7.58
전북	720,610	5.91	715,308	5.88	692,569	5.69	775,074	6.37	608,193	5.00
전남	741,340	6.08	680,743	5.59	714,139	5.87	826,881	6.79	766,673	6.30
경북	1,065,729	8.74	1,069,863	8.79	1,007,246	8.27	1,135,625	9.33	1,140,185	9.37
경남	1,322,646	10.85	1,270,731	10.44	1,222,797	10.04	1,374,480	11.29	1,335,735	10.97
제주	264,770	2.17	416,372	3.42	445,722	3.66	290,533	2.39	394,124	3.24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0.264		0.256		0.259		0.260		0.268	

- 각각의 배분지표를 살펴본 결과 분포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이 경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경상권(경남, 경북, 울산, 대구, 부산)에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각각의 배분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세수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적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음
- **제언: 현행 가중치가 적용되었을 경우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배분기준의 지속적인 활용 필요**
 - 모든 배분지표를 통해서 볼 때 불평등도가 가중치 배제 시 보다 완화되기는 했으나 세수배분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다른 지표보다 왜곡이 적게 나타난다고 판단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배분기준이 합당할 것임



[그림 4-2] 현행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2) 시·도별 안분세액: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 현행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가중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00%, 광역시 200%, 그리고 광역도 300%를 적용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을 5단계로 세분화해 제시함(수도권을 제외한 가변)
 - 재정력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 세종의 경우 보통 교부세 산정내역에 나와 있지 않아 재정력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재정력을 대리 지표화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권역을 5단계로 세분화하였음

[표 4-19]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재정력 기준)

〈현 행〉			⇒	〈재정력 기준〉		
지역별	대 상 (불변)	가 중 치		재정 자립도	대 상 (가변)	가 중 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00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00
수도권 외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0		비수도권 상위	부산, 세종, 울산	150
수도권 외 도 (세종 포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300		비수도권 차상위	대구, 광주, 대전	200
※ 현 제도 상 대상지역 불변				비수도권 차차상위	충북, 충남, 경남, 제주	250
※ 현 제도 상 대상지역 불변				그 밖의 시·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300
※ 현 제도 상 대상지역 불변				※ 재정력에 따라 대상지역 가변		

(1)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 배분기준을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1,220,186백만 원, 10.02%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216,158백만 원, 9.99%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남(9.74%), 경북(9.32%), 대구(6.80%), 부산(6.66%)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52,909백만 원 0.43%로 현행의 가중치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매우 작은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리고 수도권외의 집중도는 22.28%로 현행 가중치와 비교해서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현행 가중치에 근거 수도권 집중도 20.91%)
-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해 지방소비세를 안분한 경우 역시 세수의 역전현상 가능성이 있어 세수안분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인천시(37,873,714백만 원)의 경우 대구시(35,009,542백만 원)와 경상북도(34,535,110백만 원)에 비해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이 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안분되는 금액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67(지니계수)로 현행가중치에 근거하여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20]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소비자규모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4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소비자규모	가중치 (%)	세액(A)	구성비 (%)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00.00	12,174,075	100.00	-1,385,724	1,385,724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4.76	14.76	1,796,625	14.76	-628,819	52,380	3.78	1,220,186	10.02	-4.73	-576,438	
부산	6.21	6.21	756,058	6.21		54,736	3.95	810,794	6.66	0.45	54,736	
대구	5.72	5.72	695,915	5.72		132,198	9.54	828,114	6.80	1.09	132,198	
인천	3.09	3.09	376,425	3.09	-131,749	31,733	2.29	276,409	2.27	-0.82	-100,016	
광주	3.55	3.55	432,347	3.55		168,920	12.19	601,267	4.94	1.39	168,920	
대전	3.72	3.72	452,393	3.72		115,292	8.32	567,685	4.66	0.95	115,292	
울산	2.13	2.13	259,044	2.13		104,484	7.54	363,528	2.99	0.86	104,484	
세종	0.37	0.37	45,426	0.37		7,483	0.54	52,909	0.43	0.06	7,483	
경기	14.67	14.67	1,786,163	14.67	-625,157	55,152	3.98	1,216,158	9.99	-4.68	-570,005	
강원	4.92	4.92	598,439	4.92		112,798	8.14	711,237	5.84	0.93	112,798	
충북	4.21	4.21	512,492	4.21		100,326	7.24	612,818	5.03	0.82	100,326	
충남	6.01	6.01	731,837	6.01		60,833	4.39	792,671	6.51	0.50	60,833	
전북	5.78	5.78	703,992	5.78		63,882	4.61	767,874	6.31	0.52	63,882	
전남	5.60	5.60	682,293	5.60		106,146	7.66	788,440	6.48	0.87	106,146	
경북	8.46	8.46	1,029,727	8.46		105,454	7.61	1,135,181	9.32	0.87	105,454	
경남	9.16	9.16	1,114,682	9.16		70,949	5.12	1,185,631	9.74	0.58	70,949	
제주	1.64	1.64	200,217	1.64		41,572	3.00	241,789	1.99	0.34	41,572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196	0.267	0.5	0.075	1	2	0.178	0.478				

(2) 부가가치세 매출액(과세표준)

- 배분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1,241,868백만 원, 10.20%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206,611백만 원, 9.91%, 경상남도가 1,148,420백만 원, 9.43%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북(9.43%), 충남(6.82%), 대구(6.80%), 부산(5.95%)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50,041백만 원, 0.41%로 현행의 가중치에 근거,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역시 작은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리고 수도권외의 집중도는 22.41%로 민간최종소비지출과 비교해서 다소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근거해 지방소비세를 안분한 경우 세종시 차원에서는 세수확보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세수규모가 크게 줄어들), 무엇보다 다른 배분지표에 비해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즉,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83(지니계수)로 기존의 가중치 및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해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2-1]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과세표준 (2016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393.560	1,393.560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4.58	1,775.284	14.58	-621.349	52.677	3.78	1,206.611	9.91	-4.67	-568.673	
부산	5.50	669.164	5.50		55.046	3.95	724.210	5.95	0.45	55.046	
대구	5.71	695.268	5.71		132.946	9.54	828.213	6.80	1.09	132.946	
인천	3.13	381.079	3.13	-133.378	31.913	2.29	279.614	2.30	-0.83	-101.465	
광주	2.98	363.306	2.98		169.875	12.19	533.181	4.38	1.40	169.875	
대전	3.30	401.344	3.30		115.944	8.32	517.288	4.25	0.95	115.944	
울산	1.95	237.716	1.95		105.074	7.54	342.790	2.82	0.86	105.074	
세종	0.35	42,516	0.35		7,525	0.54	50,041	0.41	0.06	7,525	
경기	14.99	1,825.238	14.99	-638.833	55.464	3.98	1,241.868	10.20	-4.79	-583.370	
강원	5.57	677.872	5.57		113.436	8.14	791.308	6.50	0.93	113.436	
충북	4.54	552.526	4.54		100.894	7.24	653.420	5.37	0.83	100.894	
충남	6.31	768.590	6.31		61.177	4.39	829.767	6.82	0.50	61.177	
전북	5.78	703.474	5.78		64.243	4.61	767.717	6.31	0.53	64.243	
전남	5.12	623.872	5.12		106.747	7.66	730.619	6.00	0.88	106.747	
경북	8.56	1,042.198	8.56		106.050	7.61	1,148.248	9.43	0.87	106.050	
경남	8.85	1,077.070	8.85		71.350	5.12	1,148.420	9.43	0.59	71.350	
제주	2.77	337.559	2.77		41.807	3.00	379.366	3.12	0.34	41.807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1	2						
	0.226	0.283	0.086	0.202	0.517						

(3) 토착산업 매출액(토착산업지표)

- 배분기준을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물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1,455,290백만 원, 11.95%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146,292백만 원, 9.42%, 경남이 1,104,654백만 원, 9.07%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경북(8.87%), 강원(6.49%), 부산(6.44%), 대구(6.25%)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42,387백만 원, 0.35%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작은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리고 수도권의 집중도는 23.66%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비교해서 다소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
- 무엇보다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한 경우 세종시 차원에서는 세수확보에 가장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세수규모가 두드러지게 줄어들),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 역시 다른 배분지표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시물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64(지니계수)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의해 도출된 안분액을 제외하고 기존의 가중치 및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해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했을 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22]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6년) 토착산업 지표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N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471.573	1,471.573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7.69	2,153.330	17.69	-753.666	55.625	3.78	1,455.290	11.95	-5.73	-698.040	
부산	5.96	725.915	5.96	-	58.127	3.95	784.042	6.44	0.48	58.127	
대구	5.10	620.285	5.10	-	140.388	9.54	760.673	6.25	1.15	140.388	
인천	3.10	377.742	3.10	-132.210	33.699	2.29	279.231	2.29	-0.81	-98.511	
광주	3.25	395.254	3.25	-	179.385	12.19	574.638	4.72	1.47	179.385	
대전	3.28	399.313	3.28	-	122.435	8.32	521.748	4.29	1.01	122.435	
울산	1.91	232.403	1.91	-	110.957	7.54	343.360	2.82	0.91	110.957	
세총	0.28	34.441	0.28	-585.697	7.946	0.54	42.387	0.35	0.07	7.946	
경기	13.75	1,673.421	13.75	-	58.569	3.98	1,146.292	9.42	-4.33	-527.129	
강원	5.51	670.187	5.51	-	119.786	8.14	789.973	6.49	0.98	119.786	
충북	4.19	510.048	4.19	-	106.542	7.24	616.590	5.06	0.88	106.542	
충남	5.72	696.562	5.72	-	64.602	4.39	761.164	6.25	0.53	64.602	
전북	5.54	674.412	5.54	-	67.839	4.61	742.252	6.10	0.56	67.839	
전남	5.36	652.646	5.36	-	112.722	7.66	765.369	6.29	0.93	112.722	
경북	7.95	967.515	7.95	-	111.987	7.61	1,079.502	8.87	0.92	111.987	
경남	8.45	1,029.309	8.45	-	75.345	5.12	1,104.654	9.07	0.62	75.345	
제주	2.97	361.291	2.97	-	44.147	3.00	405.438	3.33	0.36	44.147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0.074	1	0.177	2	0.516				
	0.195	0.264	0.074	0.177	0.516						

(4) 인구규모(인구비율)

-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를 기준(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상남도가 1,242,867백만 원, 10.21%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상북도가 1,221,655백만 원, 10.03% 경기도가 1,217,003백만 원, 10.00%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서울(7.73%), 전남(7.31%), 전북(6.85%), 대구(6.65%)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65,369백만 원, 0.54%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더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으나 현행 가중치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작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수도권외의 집중도는 20.16%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비교해서 다소 낮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으나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대구를 비롯한 경상권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이 예측됨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한 경우 세종시 차원에서는 세수확보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세수규모가 두드러지게 줄어들), 다른 지역의 경우 세입의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64(지니계수)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의해 도출된 안분액을 제외하고 기존의 가중치 및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해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23]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인구비율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7년) 인구비율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253,573	1,253,573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1.29	1,374,841	11.29	-481,194	47,385	3.78	941,032	7.73	-3.56	-433,809	
부산	5.96	726,091	5.96		49,516	3.95	775,608	6.37	0.41	49,516	
대구	5.67	690,454	5.67		119,591	9.54	810,045	6.65	0.98	119,591	
인천	3.38	411,241	3.38	-143,934	28,707	2.29	296,013	2.43	-0.95	-115,227	
광주	3.35	408,312	3.35		152,811	12.19	561,122	4.61	1.26	152,811	
대전	3.44	419,039	3.44		104,297	8.32	523,336	4.30	0.86	104,297	
울산	2.00	243,756	2.00		94,519	7.54	338,275	2.78	0.78	94,519	
세종	0.48	58,599	0.48		6,769	0.54	65,369	0.54	0.06	6,769	
경기	14.75	1,795,555	14.75	-628,444	49,892	3.98	1,217,003	10.00	-4.75	-578,552	
강원	5.33	648,607	5.33		102,041	8.14	750,648	6.17	0.84	102,041	
충북	4.57	555,949	4.57		90,759	7.24	646,708	5.31	0.75	90,759	
충남	6.06	738,078	6.06		55,032	4.39	793,110	6.51	0.45	55,032	
전북	6.37	776,001	6.37		57,790	4.61	833,790	6.85	0.47	57,790	
전남	6.52	793,498	6.52		96,024	7.66	889,521	7.31	0.79	96,024	
경북	9.25	1,126,258	9.25		95,397	7.61	1,221,655	10.03	0.78	95,397	
경남	9.68	1,178,684	9.68		64,183	5.12	1,242,867	10.21	0.53	64,183	
제주	1.88	229,113	1.88		37,607	3.00	266,720	2.19	0.31	37,607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0.071	1	2						
	0.180	0.264	0.071	0.165	0.429						

(5) 자체세입규모(자체세입비중)

- 배분기준을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물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1,354,596백만 원, 11.13%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상북도가 1,226,091백만 원, 10.07%, 경상남도가 1,209,641백만 원, 9.94%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서울(9.92%), 충남(6.88%), 전남(6.77%), 강원(6.33%)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80,754백만 원, 0.66%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매출액, 인구규모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자체세입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외의 집중도는 23.87%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인구규모와 비교해서 다소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자체세입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한 경우 세종시 차원에서 다른 배분지표에 비해 세수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 차원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근거하여 도출된 안분액을 제외하고 다른 배분지표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시물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276(지니계수)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의해 도출된 안분액을 제외하고 다른 배분지표들에 의해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24]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자체세입비중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7년) 자체세입비중	2017년 안분원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B=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483,936	1,483,936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4.55	1,771,182	14.55	-619,914	56,093	3.78	1,207,361	9.92	-4.63	-563,821	
부산	5.21	634,316	5.21		58,615	3.95	692,932	5.69	0.48	58,615	
대구	4.50	548,334	4.50		141,567	9.54	689,902	5.67	1.16	141,567	
인천	3.91	475,503	3.91	-166,426	33,982	2.29	343,059	2.82	-1.09	-132,444	
광주	2.63	320,545	2.63		180,892	12.19	501,437	4.12	1.49	180,892	
대전	2.55	310,109	2.55		123,463	8.32	433,572	3.56	1.01	123,463	
울산	2.18	265,012	2.18		111,889	7.54	376,901	3.10	0.92	111,889	
세종	0.60	72,741	0.60		8,013	0.54	80,754	0.66	0.07	8,013	
경기	16.37	1,993,131	16.37	-697,596	59,061	3.98	1,354,596	11.13	-5.25	-638,535	
강원	5.34	650,038	5.34		120,792	8.14	770,830	6.33	0.99	120,792	
충북	4.12	501,281	4.12		107,437	7.24	608,718	5.00	0.88	107,437	
충남	6.35	772,596	6.35		65,145	4.39	837,741	6.88	0.54	65,145	
전북	4.81	585,607	4.81		68,409	4.61	654,017	5.37	0.56	68,409	
전남	5.84	710,768	5.84		113,669	7.66	824,438	6.77	0.93	113,669	
경북	9.14	1,113,163	9.14		112,928	7.61	1,226,091	10.07	0.93	112,928	
경남	9.31	1,133,664	9.31		75,978	5.12	1,209,641	9.94	0.62	75,978	
제주	2.60	316,084	2.60		44,518	3.00	360,602	2.96	0.37	44,518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276	0.070	0.153	1	2					
	0.167										

(6)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에 따른 배분지표별 종합비교

- 다음 [표 4-25]는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정리하였음
- 가중치가 적용(재정력에 근거한 5단계 세분화)된 상태에서 시물레이션 실시 결과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입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구규모,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기준으로 배분했을 시 세입증가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할 경우 불평등도가 0.276으로 형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 세수의 집중도가 경상도(경상남·북도)에 집중되어 이 역시 세수 역전현상이 일어나 세수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무엇보다 인천과 세종의 세수확보에 있어서 장애가 있음을 시사하며 인천의 경우 가중치에 근거한,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음 [그림 4-3]은 각각의 배분기준에 따라 시·도별 안분액을 보여주고 있음

[표 4-25]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증합비교(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규모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전국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서울	1,220,186	10.02	1,206,611	9.91	1,455,290	11.95	941,032	7.73	1,207,361	9.92
부산	810,794	6.66	724,210	5.95	784,042	6.44	775,608	6.37	692,932	5.69
대구	828,114	6.8	828,213	6.80	760,673	6.25	810,045	6.65	689,902	5.67
인천	276,409	2.27	279,614	2.30	279,231	2.29	296,013	2.43	343,059	2.82
광주	601,267	4.94	533,181	4.38	574,638	4.72	561,122	4.61	501,437	4.12
대전	567,685	4.66	517,288	4.25	521,748	4.29	523,336	4.3	433,572	3.56
울산	363,528	2.99	342,790	2.82	343,360	2.82	338,275	2.78	376,901	3.10
세종	52,909	0.43	50,041	0.41	42,387	0.35	65,369	0.54	80,754	0.66
경기	1,216,158	9.99	1,241,868	10.20	1,146,292	9.42	1,217,003	10	1,354,596	11.13
강원	711,237	5.84	791,308	6.50	789,973	6.49	750,648	6.17	770,830	6.33
충북	612,818	5.03	653,420	5.37	616,590	5.06	646,708	5.31	608,718	5.00
충남	792,671	6.51	829,767	6.82	761,164	6.25	793,110	6.51	837,741	6.88
전북	767,874	6.31	767,717	6.31	742,252	6.10	833,790	6.85	654,017	5.37
전남	788,440	6.48	730,619	6.00	765,369	6.29	889,521	7.31	824,438	6.77
경북	1,135,181	9.32	1,148,248	9.43	1,079,502	8.87	1,221,655	10.03	1,226,091	10.07
경남	1,185,631	9.74	1,148,420	9.43	1,104,654	9.07	1,242,867	10.21	1,209,641	9.94
제주	241,789	1.99	138,791	1.14	405,438	3.33	266,720	2.19	360,602	2.96
총액	0.267		0.283		0.264		0.264		0.276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0.267 0.283 0.264 0.264 0.276										

- 재정력에 근거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경상권에 보다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시 등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함께 수도권 가중치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무엇보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특수성에 기인해 재정적 수요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에서 큰 장애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안분기준으로 제안하기는 무리가 있음
- 제언: 재정력에 근거한 전국 시·도별 가중치(제시된 안은 수도권 100적용), 세종시는 특수성 고려한 가중치 적용



[그림 4-3] 재정력에 따른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3) 시·도별 안분세액: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 다음은 시·도별 소비지수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으로 매년 소비지수의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수배분 왜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표 4-26] 지역별 가중치 부여기준(소비지수 규모 기준)

〈현 행〉			〈소비지수 규모 기준〉		
지역별	대 상 (불변)	가 중 치	소비지수	대 상 (가변)	가 중 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00	10.0이상	서울, 경기	100
수도권 외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0	10.0미만 5.0이상	부산, 인천, 경남	150
수도권 외 도 (세종 포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300	5.0미만 4.0이상	대구, 경북	200
			4.0미만 3.0이상	대전, 충남	250
			3.0미만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300
※ 현 제도 상 대상지역 불변			※ 소지비수에 따라 대상지역 가변		

(1)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 배분기준을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1,228,293백만 원, 10.09%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224,378백만 원, 10.06% 대구가 838,231백만 원, 6.89%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광주(6.81%), 부산(6.71%), 경북(6.58%), 충남(6.56%)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99,144백만 원 0.81%로 현행의 가중치, 재정력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매우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할 수 있음
 -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의 집중도는 23.45%로 현행 가중치,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와 비교해서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현행 가중치에 근거 수도권 집중도 20.91%, 재정력에 근거한 수도권 집중도 22.28%)
- 소비지수 규모에 의한 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안분액의 경우 역시 세수의 왜곡 및 훼손의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규모가 큰 지역이 그 규모가 작은 지역에 비해 지방소비세 안분의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낮아 세수의 역전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
-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198(지니계수)로 현행가중치 및 재정력에 근거하여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 보다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표 4-27] 소비자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소비자수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4년) 소비자수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G)	세액 (D=A+B+C)	구성비 (%) (C)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458,267	1,458,267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4.83	1,804,878	14.83	-631,707	55,122	3.78	1,228,293	10.09	-4.74	-576,585	
부산	6.24	759,531	6.24	-	57,602	3.95	817,132	6.71	0.47	57,602	
대구	5.74	699,112	5.74	-	139,119	9.54	838,231	6.89	1.14	139,119	
인천	4.66	567,231	4.66	-198,531	33,394	2.29	402,094	3.30	-1.36	-165,136	
광주	5.35	651,499	5.35	-	177,763	12.19	829,262	6.81	1.46	177,763	
대전	4.67	568,089	4.67	-	121,328	8.32	689,417	5.66	1.00	121,328	
울산	4.28	520,468	4.28	-	109,953	7.54	630,421	5.18	0.90	109,953	
세종	0.75	91,269	0.75	-	7,875	0.54	99,144	0.81	0.06	7,875	
경기	14.74	1,794,368	14.74	-628,029	58,039	3.98	1,224,378	10.06	-4.68	-569,990	
강원	4.94	601,188	4.94	-	118,703	8.14	719,891	5.91	0.98	118,703	
충북	5.07	617,815	5.07	-	105,579	7.24	723,393	5.94	0.87	105,579	
충남	6.04	735,199	6.04	-	64,018	4.39	799,217	6.56	0.53	64,018	
전북	4.84	589,355	4.84	-	67,226	4.61	656,581	5.39	0.55	67,226	
전남	4.69	571,190	4.69	-	111,703	7.66	682,893	5.61	0.92	111,703	
경북	5.66	689,638	5.66	-	110,974	7.61	800,612	6.58	0.91	110,974	
경남	5.52	671,881	5.52	-	74,663	5.12	746,545	6.13	0.61	74,663	
제주	1.98	241,364	1.98	-	43,748	3.00	285,112	2.34	0.36	43,748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2	0.301	-	-	-	-
			1	1	1						
	0.117	0.198	0.047	0.110							

(2) 부가가치세 매출액(과세표준)

- 배분기준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1,251,583백만 원, 10.28%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215,991백만 원, 9.99% 대구가 839,310백만 원, 6.89%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충남(6.88%), 경북(6.66%), 강원(6.58%), 충북(6.35%)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93,444백만 원 0.77%로 현행의 가중치,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와 비교해 매우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됨(민간최종소비지출에 비하면 세수규모가 작음)
 -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의 집중도는 23.62%로 현행 가중치,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와 비교해서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소비지수 규모에 의한 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안분액의 경우 역시 세수의 왜곡 및 훼손의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193(지니계수)로 현행가중치 및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로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배분기준에 있어서 민간최종소비지출과 비교해서도 불평등도 측면에서는 더욱 낮아졌음이 예측됨

[표 4-28]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과세표준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과세표준 (2016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468,533	1,468,533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4.67	1,785,355	14.67	-624,874	55,511	3.78	1,215,991	9.99	-4.68	-569,364	
부산	5.53	672,960	5.53	-	58,007	3.95	730,967	6.00	0.48	58,007	
대구	5.74	699,212	5.74	-	140,098	9.54	839,310	6.89	1.15	140,098	
인천	4.72	574,862	4.72	-201,202	33,629	2.29	407,290	3.35	-1.38	-167,572	
광주	4.50	548,050	4.50	-	179,014	12.19	727,065	5.97	1.47	179,014	
대전	4.14	504,526	4.14	-	122,182	8.32	626,708	5.15	1.00	122,182	
울산	3.93	478,128	3.93	-	110,727	7.54	588,856	4.84	0.91	110,727	
세총	0.70	85,514	0.70	-	7,930	0.54	93,444	0.77	0.07	7,930	
경기	15.08	1,835,592	15.08	-642,457	58,448	3.98	1,251,583	10.28	-4.80	-584,010	
강원	5.60	681,718	5.60	-	119,539	8.14	801,257	6.58	0.98	119,539	
충북	5.48	666,793	5.48	-	106,322	7.24	773,115	6.35	0.87	106,322	
충남	6.35	772,950	6.35	-	64,469	4.39	837,418	6.88	0.53	64,469	
전북	4.84	589,554	4.84	-	67,699	4.61	657,253	5.40	0.56	67,699	
전남	4.29	522,843	4.29	-	112,490	7.66	635,332	5.22	0.92	112,490	
경북	5.74	698,741	5.74	-	111,755	7.61	810,496	6.66	0.92	111,755	
경남	5.34	649,908	5.34	-	75,189	5.12	725,097	5.96	0.62	75,189	
제주	3.35	407,369	3.35	-	44,056	3.00	451,425	3.71	0.36	44,056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1	1	2						
	0.108	0.193	0.043	0.102	0.295						

(3) 토착산업 매출액(토착산업지표)

- 배분기준을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1,461,146백만 원, 12.00%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1,151,569백만 원, 9.46% 강원도가 797,185백만 원, 6.55%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부산(6.48%), 광주(6.42%), 대구(6.31%), 충남(6.29%)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77,363백만 원 0.64%로 재정력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세수규모 및 비중을 예측되며 현행의 가중치, 그리고 소비지수에 의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비교하면 세수규모가 작음
 - 토착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의 집중도는 24.78%로 현행 가중치,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그리고 소비지수를 가중치로 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과 비교해서는 집중도가 낮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소비지수에 의한 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안분액의 경우 역시 세수의 왜곡 및 훼손의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 있다는 예측이 역시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198(지니계수)로 현행가중치 및 재정력을 근거한 가중치에서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서도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지수에 의한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인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비교해서도 불평등도 측면에서는 다소 높아졌음이 예측됨

[표 4-29] 소비자수 규모에 근거한 기준치 적용 시 토착산업지표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6년) 토착산업 지표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F=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541,218	1,541,218	100.00	12,174,075	100.00	0	0	
서울	17.73	2,158,289	17.73	-755,401	58,258	3.78	1,461,146	12.00	-5.73	-697,143	
부산	5.98	727,587	5.98		60,878	3.95	788,465	6.48	0.50	60,878	
대구	5.11	621,713	5.11		147,032	9.54	768,746	6.31	1.21	147,032	
인천	4.66	567,917	4.66	-198,771	35,294	2.29	404,440	3.32	-1.34	-163,477	
광주	4.88	594,245	4.88		187,874	12.19	782,120	6.42	1.54	187,874	
대전	4.11	500,291	4.11		128,229	8.32	628,520	5.16	1.05	128,229	
울산	3.83	465,877	3.83		116,208	7.54	582,085	4.78	0.95	116,208	
세종	0.57	69,040	0.57		8,323	0.54	77,363	0.64	0.07	8,323	
경기	13.78	1,677,274	13.78	-587,046	61,340	3.98	1,151,569	9.46	-4.32	-525,705	
강원	5.52	671,730	5.52		125,455	8.14	797,185	6.55	1.03	125,455	
충북	5.04	613,467	5.04		111,584	7.24	725,051	5.96	0.92	111,584	
충남	5.73	698,166	5.73		67,659	4.39	765,825	6.29	0.56	67,659	
전북	4.63	563,304	4.63		71,050	4.61	634,354	5.21	0.58	71,050	
전남	4.48	545,124	4.48		118,057	7.66	663,182	5.45	0.97	118,057	
경북	5.31	646,495	5.31		117,287	7.61	763,782	6.27	0.96	117,287	
경남	5.08	619,008	5.08		78,910	5.12	697,918	5.73	0.65	78,910	
제주	3.57	434,547	3.57		46,237	3.00	480,784	3.95	0.38	46,237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5	1	2							
	0.121	0.198	0.048	0.114	0.340						

(4) 인구규모(인구비율)

-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를 기준(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물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1,230,049백만 원, 10.18%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951,020백만 원, 7.87% 경상북도가 854,628백만 원, 7.07%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대구(6.77%), 충남(6.63%), 부산(6.48%), 경남(6.45%)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125,278백만 원 1.04%로 재정력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세수 규모 및 비중을 예측되며 이는 현행의 가중치, 그리고 소비지수에 의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과 비교하면 세수규모가 매우 큼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의 집중도는 21.64%로 현행 가중치,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지수에 의한 가중치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비교해서도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소비지수 규모에 의한 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안분액의 경우 역시 세수의 왜곡 및 훼손의 가능성 낮다는 예측이 역시 가능하며 시물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174(지니계수)로 현행가중치 및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에서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서도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무엇보다 소비지수 규모에 의한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지표와 비교해서도 불평등도 측면에서는 가장 낮을 것이 예측됨

[표 4-30]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인구비용에 따른 실제세입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7년)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입규모			최종세입증감	
	인구비용	세액(A)	구성비 (%)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 (G)	구성비 (H=G-F)	세액 (E=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340,356	1,253,573	100.00	12,087,292	100.00	0	0		
서울	11.42	1,390,208	11.42	-486,573	47,385	3.78	951,020	7.87	-3.55	-439,188		
부산	6.03	734,207	6.03		49,516	3.95	783,724	6.48	0.45	49,516		
대구	5.73	698,171	5.73		119,591	9.54	817,762	6.77	1.03	119,591		
인천	5.12	623,756	5.12	-218,315	28,707	2.29	434,148	3.59	-1.53	-189,608		
광주	5.09	619,313	5.09		152,811	12.19	772,124	6.39	1.30	152,811		
대전	4.35	529,654	4.35		104,297	8.32	633,951	5.24	0.89	104,297		
울산	4.05	492,961	4.05		94,519	7.54	587,481	4.86	0.81	94,519		
세종	0.97	118,509	0.97		6,769	0.54	125,278	1.04	0.06	6,769		
경기	14.91	1,815,625	14.91	-635,469	49,892	3.98	1,230,049	10.18	-4.74	-585,577		
강원	5.39	655,857	5.39		102,041	8.14	757,898	6.27	0.88	102,041		
충북	5.54	674,596	5.54		90,759	7.24	765,354	6.33	0.79	90,759		
충남	6.13	746,328	6.13		55,032	4.39	801,360	6.63	0.50	55,032		
전북	5.37	653,895	5.37		57,790	4.61	711,685	5.89	0.52	57,790		
전남	5.49	668,639	5.49		96,024	7.66	764,663	6.33	0.83	96,024		
경북	6.24	759,231	6.24		95,397	7.61	854,628	7.07	0.83	95,397		
경남	5.87	715,115	5.87		64,183	5.12	779,298	6.45	0.57	64,183		
제주	2.28	278,008	2.28		37,607	3.00	315,615	2.61	0.33	37,607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1	2								
			0.038	0.239								

(5) 자체세입규모(자체세입비중)

-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기준(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으로 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감안한 시·도별 안분세액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1,361,422백만 원, 11.27%로 가장 큰 세입규모와 비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가 1,213,427백만 원, 10.04% 경상북도가 858,946백만 원, 7.11%로 높은 세입규모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이 외에 충남(6.97%), 강원(6.41%), 경남(6.29%), 전남(5.87%), 순으로 높은 비중의 세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154,262백만 원 1.28%로 재정력에 근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세수 규모 및 비중을 예측되며 이는 현행의 가중치, 그리고 소비지수에 의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와 비교해도 세수규모가 가장 큼
 - 자체세입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될 때 수도권의 집중도는 25.45%로 현행 가중치,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소비지수에 의한 가중치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지표 매출액, 그리고 인구규모와 비교해서도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소비지수에 의한 구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안분액의 경우 역시 세수의 왜곡 및 훼손의 가능성 낮다는 예측이 역시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시·도별 불평등도는 0.198(지니계수)로 현행가중치 및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에서 도출된 불평등도와 비교해서도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소비지수 규모에 의한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 토착산업 매출액과 비교해서도 불평등도가 동일, 인구규모,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비교해서는 불평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표 4-31] 소비자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자체세임규모 따른 실제세임규모 시뮬레이션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중치적용 (2017년) 자체세임 비중	2017년 안분현황		지역상생발전기금			실제세임규모			최종세입증감	
		세액(A)	구성비 (%)(F)	출연(B)	재분배(C)	구성비 (%)	세액 (D=A+B+C)	구성비 (%)(G)	구성비 (H=G-F)	세액 (B=D-A)	
전국	100.00	12,174,075	100.00	-1,575,406	1,483,936	100.00	12,082,605	100.00	-	-	0
서울	14.63	1,780,514	14.63	-623,180	56,093	3.78	1,213,427	10.04	-	-	-567,087
부산	5.24	637,658	5.24	-	58,615	3.95	696,274	5.76	-	-	58,615
대구	4.53	551,223	4.53	-	141,567	9.54	692,791	5.73	-	-	141,567
인천	5.89	717,012	5.89	-250,954	33,982	2.29	500,040	4.14	-	-	-216,972
광주	3.97	483,351	3.97	-	180,892	12.19	664,243	5.50	-	-	180,892
대전	3.20	389,678	3.20	-	123,463	8.32	513,141	4.25	-	-	123,463
울산	4.38	532,817	4.38	-	111,889	7.54	644,705	5.34	-	-	111,889
세종	1.20	146,248	1.20	-	8,013	0.54	154,262	1.28	-	-	8,013
경기	16.46	2,003,633	16.46	-701,271	59,061	3.98	1,361,422	11.27	-	-	-642,211
강원	5.37	653,462	5.37	-	120,792	8.14	774,255	6.41	-	-	120,792
충북	4.97	604,707	4.97	-	107,437	7.24	712,144	5.89	-	-	107,437
충남	6.38	776,667	6.38	-	65,145	4.39	841,811	6.97	-	-	65,145
전북	4.03	490,577	4.03	-	68,409	4.61	558,987	4.63	-	-	68,409
전남	4.89	595,427	4.89	-	113,669	7.66	709,097	5.87	-	-	113,669
경북	6.13	746,019	6.13	-	112,928	7.61	858,946	7.11	-	-	112,928
경남	5.62	683,782	5.62	-	75,978	5.12	759,759	6.29	-	-	75,978
제주	3.13	381,299	3.13	-	44,518	3.00	425,817	3.52	-	-	44,518
불평등도	Entropy	Gini		Atkinson							
		0.198	0.039	0.083	0.198	-	-	-	-	-	-

(6) 소비지수 가중치 적용에 따른 배분지표별 종합비교

- 다음 [표 4-32]는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정리하였음
- 가중치가 적용(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5단계 세분화)된 상태에서 시물레이션 실시 결과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세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인구규모,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기준으로 배분했을 시 세입증가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그러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배분기준을 자체세입규모를 중심으로 할 경우 불평등도가 0.198로 형평화 효과가 클 수 있으나 인구규모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세종시의 경우 세수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제시되었음을 시사하며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된 가중치,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확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라 판단됨
 - 또한 충청권(충북, 대전)의 세입규모와 비중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음(충남만 다소 감소)
- 다음 [그림 4-4]는 각각의 배분기준에 따라 시·도별 안분액을 보여주고 있음

[표 4-32] 시·도별 배분기준에 따른 실제세입 종합비교(소비자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재세입규모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실제세입	구성비 (%)
전국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174,075	100.00	12,087,292	100.00	12,082,605	100.00
서울	1,228,293	10.09	1,215,991	9.99	1,461,146	12.00	951,020	7.87	1,213,427	10.04
부산	817,132	6.71	730,967	6.00	788,465	6.48	783,724	6.48	696,274	5.76
대구	838,231	6.89	839,310	6.89	768,746	6.31	817,762	6.77	692,791	5.73
인천	402,094	3.30	407,290	3.35	404,440	3.32	434,148	3.59	500,040	4.14
광주	829,262	6.81	727,065	5.97	782,120	6.42	772,124	6.39	664,243	5.5
대전	689,417	5.66	626,708	5.15	628,520	5.16	633,951	5.24	513,141	4.25
울산	630,421	5.18	588,856	4.84	582,085	4.78	587,481	4.86	644,705	5.34
세종	99,144	0.81	93,444	0.77	77,363	0.64	125,278	1.04	154,262	1.28
경기	1,224,378	10.06	1,251,583	10.28	1,151,569	9.46	1,230,049	10.18	1,361,422	11.27
강원	719,891	5.91	801,257	6.58	797,185	6.55	757,898	6.27	774,255	6.41
충북	723,393	5.94	773,115	6.35	725,051	5.96	765,354	6.33	712,144	5.89
충남	799,217	6.56	837,418	6.88	765,825	6.29	801,360	6.63	841,811	6.97
전북	656,581	5.39	657,253	5.40	634,354	5.21	711,685	5.89	558,987	4.63
전남	682,893	5.61	635,332	5.22	663,182	5.45	764,663	6.33	709,097	5.87
경북	800,612	6.58	810,496	6.66	763,782	6.27	854,628	7.07	858,946	7.11
경남	746,545	6.13	725,097	5.96	697,918	5.73	779,298	6.45	759,759	6.29
제주	285,112	2.34	451,425	3.71	480,784	3.95	315,615	2.61	425,817	3.52
총액	0.198		0.193		0.198		0.174		0.198	
분평균도(Gini Coefficient)										
0.198 0.193 0.198 0.174 0.198										

-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였을 때 각각의 배분지표 모두 형평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종시의 세입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임
 - 인천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함께 수도권 가중치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입 확보에 긍정적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충청권(충북, 대전)의 세수입 규모와 비중이 현행 가중치 적용과 비교해 커졌기 때문에 충청권의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됨
- 제언: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로 가져갈 시 세종시의 세수입확충 효과가 매우 크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매우 우수, 그리고 차선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자체세입규모를 제언할 수 있음



[그림 4-4] 소비지수에 따른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별 안분액

제3절 세종시의 주요 안분기준 타당성 검토

1. 지방소비세 주요 안분기준 타당성 검토 필요성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충돌하였으며 전자는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투입해야한다는 측면이 있고, 후자는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되면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전재원의 감소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는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지역 간 형평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김재훈, 2011)
 - 이러한 점에서 지방소비세제도가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당시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배분에 수도권 소재,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효율성의 강화 취지와는 애초에 거리가 있는 상황임
 - 정부의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정치적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Wildavsky, 1961)라는 점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100% 형평성만을 고려한 배분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음(김재훈, 2011)
 - 즉, 효율성과 형평성을 얼마나 적절하게 배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임
- 현행 지방소비세는 공동이용방식으로 특정세목에 대해서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여 정부가 징수한 이후에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세입을 지역에 배분하는 공동세(tax sharing) 방식에 해당함
-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기준을 인구규모, 토착산업지표, 부가가치세 징수액 등으로 변경하자는 새로운 대안과 지역별 가중치 적용에 대한 대안 역시 함께 제시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율이 21%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 및 가중치에 대한 제언을 하였음
- 그러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로 제시한 지방소비세에 관해 제시된 제언에 대해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조사

1)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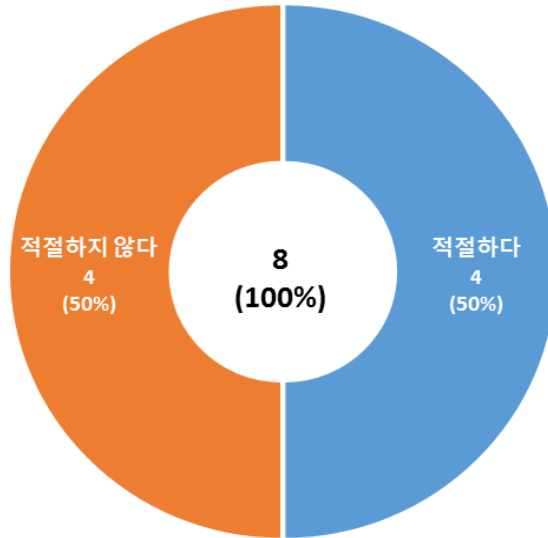
-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재정분야 교수 3인, 연구원 3인, 공무원 2인을 포함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다음 전문가 조사는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하여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4일 동안 조사원이 직접 대면조사 또는 온라인상으로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표 4-33] 전문가 조사 참여자

구분	내용	참여자수
연구자	- 지방재정전공 대학교수	3명
	- 지방재정전공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3명
공무원	- 지방재정 분야 담당공무원	2명
계	- 학계·실무계 전문가	8명

2) 현행 배분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행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4명,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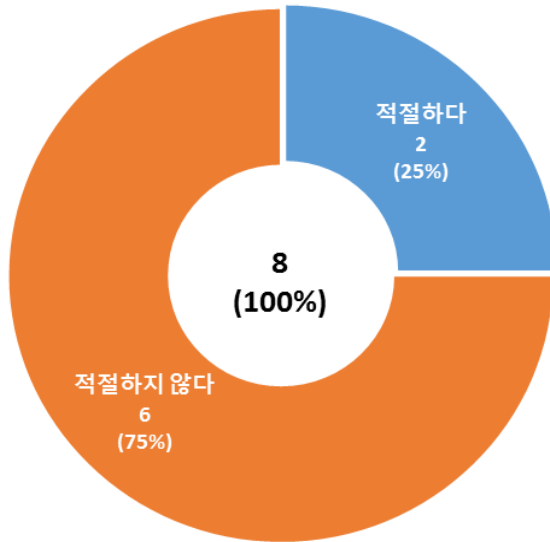


[그림 4-5]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

- 현행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적절하다는 의견
 - 소비세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비수준(규모)의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의견
 - 다른 대안의 실행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
- 현행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민간최종소비지출 통계가 소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소득에 더 밀접한 지표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 지역주민의 타 지역 소비까지 반영하는 거주지 기준 집계는 지역 내 매출을 반영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과 상충됨
- 현행 배분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중에서 총 4명 중 2명이 인구 규모를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체세입기준과 부가가치세 매출액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3) 현행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한 의견

- 현행 가중치 적용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 8명 중 2명을 제외한 6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안적인 가중치 부여 방식의 필요성이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함



[그림 4-6] 현행 가중치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

- 현행 가중치 적용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
 - 현행 가중치 적용 방식은 지역의 경제력과 재정규모를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행 가중치 배분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은 지방소비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 간 형평화의 목적은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특히, 현재 부여하는 방식의 가중치가 합리적 기준에 의도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지수 규모 또는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

- 그 밖에 지역의 인구규모, 소비자의 수(지역의 소비자 숫자를 고려)에 따른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 가중치 배분방식의 다른 대안으로 소비지수 규모 3명,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2명, 인구규모 1명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민간 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규모)과 가중치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다수였음

4) 개별 배분방식-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한 의견

- 지방소비세의 안분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재정전문가로 하여금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도출된 주요 대안을 중심으로 다음의 평가기준(합목적성, 지역간 형평성, 대안의 실행가능성)에 근거해 조사를 실시함

(1) 1안【배분기준:가중치=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수도권·광역시·도) 기준】

- 배분기준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로 현행 가중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3.63점으로 보통 이하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간 형평성은 5.13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7.13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보통 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표 4-34] 1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3.63
지역 간 형평성	5.13
대안의 실행가능성	7.13
평균	5.29

(2) 2안[배분기준:가중치=민간최종소비지출:가중치 배제]

- 배분기준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로 가중치 배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4.63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며, 지역 간 형평성은 2.63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2.75점으로 보통 이하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3.33점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함

[표 4-35] 2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4.63
지역 간 형평성	2.63
대안의 실행가능성	2.75
평균	3.33

(3) 3안[배분기준:가중치=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규모]

- 배분기준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로 소비지수 규모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5.7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간 형평성은 4.38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4.63점으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4.92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가 나타남

[표 4-36] 3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5.75
지역 간 형평성	4.38
대안의 실행가능성	4.63
평균	4.92

(4) 4안[배분기준:가중치=민간최종소비지출:재정력]

- 배분기준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로 재정력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4.50점, 지역 간 형평성은 4.75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며,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4.38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4.54점으로 보통 정도의 평가점수를 받음

[표 4-37] 4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4.50
지역 간 형평성	4.75
대안의 실행가능성	4.38
평균	4.54

(5) 5안[배분기준:가중치=인구규모:현행(수도권·광역시·도) 기준]

- 배분기준으로 인구규모, 가중치로 현행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5.75점, 지역 간 형평성은 6.50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5.63점으로 각각의 항목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 점수 역시 5.96점으로 보통 이상 긍정적 평가가 나타남

[표 4-38] 5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5.75
지역 간 형평성	6.50
대안의 실행가능성	5.63
평균	5.96

(6) 6안[배분기준:가중치=인구규모:가중치 배제]

- 배분기준으로 인구규모, 가중치로 가중치 배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6.50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간 형평성은 4.50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4.63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음
-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5.21점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점수를 받음

[표 4-39] 6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6.50
지역 간 형평성	4.50
대안의 실행가능성	4.63
평균	5.21

(7) 7안[배분기준:가중치=인구규모:소비지수 규모]

- 배분기준으로 인구규모, 가중치로 소비지수 규모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6.75점, 지역 간 형평성은 6.50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5.63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점수 역시 6.29점의 보통 이상의 점수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남

[표 4-40] 7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6.75
지역 간 형평성	6.50
대안의 실행가능성	5.63
평균	6.29

(8) 8안[배분기준:가중치=인구규모:재정력]

- 배분기준으로 인구규모, 가중치로 재정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5.50점, 지역 간 형평성은 6.00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4.13점, 보통 이하의 점수로 다소 부정적 평가로 나타남
-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5.21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표 4-41] 8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5.50
지역 간 형평성	6.00
대안의 실행가능성	4.13
평균	5.21

(9) 9안[배분기준:가중치=자체세입규모:현행(수도권·광역시·도) 기준]

- 배분기준으로 자체세입규모, 가중치로 현행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4.00점, 지역 간 형평성은 4.25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4.38점으로 모든 항목이 보통 이하의 점수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4.21점으로 다소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표 4-42] 9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4.00
지역 간 형평성	4.25
대안의 실행가능성	4.38
평균	4.21

(10) 10안[배분기준:가중치=자체세입규모:가중치 배제]

- 배분기준으로 자체세입규모, 가중치로 가중치 배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4.00점, 지역 간 형평성은 2.63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2.63점으로 각각의 항목 모두 보통 이하의 점수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점수 역시 3.08점으로 보통 이하로 다소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남

[표 4-43] 10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4.00
지역 간 형평성	2.63
대안의 실행가능성	2.63
평균	3.08

(11) 11안 [배분기준:가중치=자체세입규모:소비지수 규모]

- 배분기준으로 자체세입규모, 가중치로 소비지수 규모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3.75점, 지역 간 형평성은 3.13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2.50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각각 보통 이하의 점수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점수 역시 3.13점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표 4-44] 11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3.75
지역 간 형평성	3.13
대안의 실행가능성	2.50
평균	3.13

(12) 12안【배분기준:가중치=자체세입규모:재정력】

- 배분기준으로 자체세입규모, 가중치로 재정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합목적성은 9.00점 만점에 4.00점, 지역 간 형평성은 3.50점, 대안의 실행가능성은 2.75점으로 보통이하의 점수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
-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3.42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가 나타남

[표 4-45] 12안 평가점수

평가기준	점수
합목적성	4.00
지역 간 형평성	3.50
대안의 실행가능성	2.75
평균	3.42

(13) 전체 대안의 비교

- 전체 대안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1순위는 6.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7안【인구규모-소비지수 규모】기준으로 분석되었음
- 2순위는 5.96점을 받은 5안【인구규모-현행 가중치】기준이었으며, 3순위는 5.29점을 받은 1안【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 가중치】기준으로 나타났음
- 【인구규모-가중치 배제】인 6안과【인구규모-재정력】기준인 8안이 5.21점으로 각각 4순위를 차지함

[표 4-46] 전체 대안별 평가 비교

대안 번호	평가기준		점수	순위
	배분기준	가중치		
1안	민간최종소비지출	현행(수도권, 광역시, 도) 기준	5.29	3순위
2안	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배제	3.33	9순위
3안	민간최종소비지출	소비지수 규모	4.92	5순위
4안	민간최종소비지출	재정력 기준	4.54	6순위
5안	인구규모	현행(수도권, 광역시, 도) 기준	5.96	2순위
6안	인구규모	가중치 배제	5.21	4순위
7안	인구규모	소비지수 규모	6.29	1순위
8안	인구규모	재정력 기준	5.21	4순위
9안	자체세입규모	현행(수도권, 광역시, 도) 기준	4.21	7순위
10안	자체세입규모	가중치 배제	3.08	11순위
11안	자체세입규모	소비지수 규모	3.13	10순위
12안	자체세입규모	재정력 기준	3.42	8순위

5) 개별 대안의 우선순위 분석

- 질문지 작성 시 개별 대안에 대한 의견과 각 대안들의 우선순위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측정하고 개별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위의 12개 대안에 대하여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작성하였음
- 대안의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의 총계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단순 합계 점수이며, 가중치 부여점수는 1순위 응답에 3점, 2순위 응답에 2점, 3순위 응답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산정한 총합점수임
-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있어 역시【인구규모-소비지수 규모】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인구규모-가중치 배제】.【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 기준】.【인구규모-현행 기준】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

[표 4-47] 대안별 우선순위 및 총계

대안별 구분	순위			총계	가중치 부여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① 7안【인구규모-소비지수 규모】	3	1	2	6	13
② 6안【인구규모-가중치 배제】	2	2	-	4	10
③ 1안【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 기준】	1	1	1	3	6
④ 5안【인구규모-현행 기준】	-	2	2	4	6
⑤ 3안【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규모】	1	1	-	2	5
⑥ 2안【민간최종소비지출-가중치 배제】	1	-	1	2	4
⑦ 9안【자체세입규모-현행 기준】	-	1	-	1	2
⑧ 8안【인구규모-재정력 기준】	-	-	1	1	1
무응답	-	-	1	1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5장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

- 지방재정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세원의 배분구조 한계(8:2 세입구조)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
 - 현행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세목선택권, 세율결정권의 제약이 발생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증가로 대응지방비 포함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분권의 핵심으로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바, 현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8:2에서 7:3, 향후 장기적으로 6:4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됨
-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현 부가가치세 11%에서 21%로 확대) 논의에 따라 현행 배분기준과 가중치 적용에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세수의 확충과 형평화 효과가 적절하게 고려된 합리적인 안분체계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무엇보다 세종시 차원에서 세수의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재원규모의 확대에 대응해 세종시의 재정계획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임
 - 즉, 지방소비세가 인상될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행 가중치와 배분기준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의 마련이 시급함
- 이를 위해 학계 및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제기되는 5가지 배분기준(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규모)과 4가지 측면의 가중치 적용방식(가중치 배

제, 현행 가중치 적용,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소비지수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에 근거해 각각의 배분기준과 가중치 적용방식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시·도별 실제세입규모 도출 산식(세입확충)

시·도별 실제세입규모 = 배분기준 액수 비율(예,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의 시·도별 비율)에 근거한 소비세 규모 - 수도권 지역상생발전기금(서울, 경기, 인천의 출연금 35%) + 출연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수도권 외 광역시·도 안분

※ 시·도별 재정격차 분석 도출 산식(재정 형평성: 지니계수 중심)

$$Gini(\text{지니계수}) = \frac{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이 중 n 은 17개 시·도 총 수, Y_i 는 특정 광역자치단체, i 의 수요자대비 시·도별 예산액을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한 평균 예산액은 μ 로 나타남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 가중치 배제 안분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에 대해 가중치가 배제되었을 때 안분세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각각의 배분 지표상 지역별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세수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가중치 배제 시 수도권에 집중된 세수에 대한 지역 간 재정균형이 잘 반영된 배분기준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되기에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된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 세종시 차원에서 인구규모를 근거로 배분할 때, 세입증가의 효과가 다른 배분지표에 비해 큼
 - 이에 반해 세입규모의 경우 세수확보가 가장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크게 나타나 배분지표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제언: 가중치 배제 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배분기준 도출 고려

[표 5-1] 15%분 지방소비세 가중치 배제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16.37	16.19	19.15	13.03	15.91
부산	7.49	6.72	7.13	7.39	6.35
대구	6.44	6.45	5.93	6.44	5.48
인천	3.71	3.75	3.67	4.10	4.52
광주	5.17	4.72	4.96	4.94	4.50
대전	4.58	4.25	4.24	4.35	3.67
울산	3.72	3.54	3.50	3.56	3.80
세종	0.51	0.48	0.41	0.63	0.74
경기	16.31	16.66	15.08	16.85	17.85
강원	4.19	4.55	4.52	4.41	4.45
충북	4.1	4.32	4.09	4.34	4.06
충남	4.75	4.94	4.52	4.85	4.93
전북	4.01	4.01	3.85	4.38	3.47
전남	4.47	4.22	4.35	4.99	4.62
경북	6.01	6.08	5.72	6.52	6.38
경남	6.93	6.74	6.41	7.42	6.98
제주	1.63	2.37	2.48	1.79	2.25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335	0.326	0.339	0.312	0.333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 **현행 가중치 적용 안분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에 따라 현행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세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역시 배분지표별 분포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경남, 경북, 울산, 대구, 부산 등 경상권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근거한 배분을 살펴보면 경상권에 비해 수도권의 배분기준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나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세수가 역전된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수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적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음

- 현행 가중치가 적용되었을 때 모든 배분지표에서 불평등도가 가중치를 배제했을 때 보다 완화되었으나 세수배분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지표보다 왜곡이 적게 나타나는 현행 민간최종 소비지출에 근거한 배분기준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언: 현행 가중치가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서 현행 방식인 민간최종 소비지출에 근거한 배분기준의 지속적인 활용

[표 5-2] 15%분 지방소비세 현행 가중치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9.40	9.23	11.15	7.19	9.22
부산	8.19	7.25	7.86	7.77	6.91
대구	6.38	6.34	5.83	6.19	5.27
인천	2.13	2.14	2.14	2.26	2.62
광주	4.64	4.08	4.40	4.28	3.83
대전	4.38	3.96	4.00	4.00	3.31
울산	3.47	3.23	3.23	3.20	3.55
세종	0.76	0.71	0.59	0.95	1.17
경기	9.36	9.50	8.79	9.29	10.35
강원	5.48	6.06	6.05	5.73	5.89
충북	5.50	5.85	5.51	5.79	5.42
충남	6.55	7.53	6.90	7.18	7.58
전북	5.91	5.88	5.69	6.37	5.00
전남	6.08	5.59	5.87	6.79	6.30
경북	8.74	8.79	8.27	9.33	9.37
경남	10.85	10.44	10.04	11.29	10.97
제주	2.17	3.42	3.66	2.39	3.24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264	0.256	0.259	0.260	0.268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 재정력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안분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을 재정력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안분

세액의 시뮬레이션 결과, 경상권에 세수가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배분기준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았으며,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 역시 높게 나타남

- 특히,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포함되어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수도권 가중치로 인해 세수확충이 어려움 상황을 반영
- 세종시의 경우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을 때, 현행 가중치 적용과 비교해서 재정확충(세입확충)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제언: 재정력에 근거한 전국 시·도별 가중치(제시된 안은 수도권 100적용), 세종시는 특수성 고려한 가중치 적용

[표 5-3] 15%분 지방소비세 재정력 가중치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10.02	9.91	11.95	7.73	9.92
부산	6.66	5.95	6.44	6.37	5.69
대구	6.8	6.80	6.25	6.65	5.67
인천	2.27	2.30	2.29	2.43	2.82
광주	4.94	4.38	4.72	4.61	4.12
대전	4.66	4.25	4.29	4.3	3.56
울산	2.99	2.82	2.82	2.78	3.10
세종	0.43	0.41	0.35	0.54	0.66
경기	9.99	10.20	9.42	10	11.13
강원	5.84	6.50	6.49	6.17	6.33
충북	5.03	5.37	5.06	5.31	5.00
충남	6.51	6.82	6.25	6.51	6.88
전북	6.31	6.31	6.10	6.85	5.37
전남	6.48	6.00	6.29	7.31	6.77
경북	9.32	9.43	8.87	10.03	10.07
경남	9.74	9.43	9.07	10.21	9.94
제주	1.99	3.42	3.33	2.19	2.96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267	0.283	0.264	0.264	0.276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안분
세액 시뮬레이션

- 지방소비세 15% 증가분을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해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안분세액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가 다른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가장 낮아 지역 간 재정형평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세종시의 세입확충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며,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가중치,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사료됨
- 특히, 충청권(충북, 대전)의 세수입 규모와 비중이 현행 가중치 적용과 비교해 커졌기 때문에 충청권의 상생협력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 판단됨

□ 제언: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로 가져갈 시 세종시의 세수입확충 효과가 매우 크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매우 우수, 그리고 차선으로 민간최종 소비지출액, 자체세입규모를 제언할 수 있음

[표 5-4] 15%분 지방소비세 소비지수 규모 가중치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민간최종 소비지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	인구규모	자체세입 규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10.09	9.99	12.00	7.87	10.04
부산	6.71	6.00	6.48	6.48	5.76
대구	6.89	6.89	6.31	6.77	5.73
인천	3.30	3.35	3.32	3.59	4.14
광주	6.81	5.97	6.42	6.39	5.5
대전	5.66	5.15	5.16	5.24	4.25
울산	5.18	4.84	4.78	4.86	5.34
세종	0.81	0.77	0.64	1.04	1.28
경기	10.06	10.28	9.46	10.18	11.27
강원	5.91	6.58	6.55	6.27	6.41
충북	5.94	6.35	5.96	6.33	5.89
충남	6.56	6.88	6.29	6.63	6.97
전북	5.39	5.40	5.21	5.89	4.63
전남	5.61	5.22	5.45	6.33	5.87
경북	6.58	6.66	6.27	7.07	7.11
경남	6.13	5.96	5.73	6.45	6.29
제주	2.34	3.71	3.95	2.61	3.52
불평등도(Gini Coefficient)					
총액 기준	0.198	0.193	0.198	0.174	0.198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배분기준, 가중치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를 선정해서 심층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분기준 및 가중치 부여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아울러 각 대안별 평균점수 및 우선순위 비교와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함

□ 평균값에 따른 우선순위 비교

- 배분기준 및 가중치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한 결과 평균값에 따른 우선순위를 비교해보면, 1순위로 7안[인구규모(배분기준) - 소비지수 규모(가중치)]이 도출되었음

- 그리고 2순위는 5안【인구규모(배분기준) - 현행 가중치】기준이었으며, 3순위는 1안【민간최종소비지출(배분기준) - 현행 가중치】기준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6안【인구규모(배분기준) - 가중치 배제】과 8안【인구규모(배분기준) - 재정력(가중치)] 각각 4순위를 차지함

□ 가중치 부여 값에 따른 우선순위 비교

- 다음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하여 각각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종합적 우선순위가 도출되도록 작성함
 - 그리고 각각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에 1점)하여 재산정한 총합점수를 근거로 함
-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인구규모(배분기준)-소비지수 규모(가중치)]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구규모(배분기준) - 가중치 배제], 【민간최종소비지출(배분기준) - 현행 가중치], 【인구규모 - 현행 가중치]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5] 대안별 평균점수 및 우선순위 비교

대안 번호	평가기준		우선순위 (평균값)	우선순위 (가중치부 여 값)
	배분기준	가중치		
1안	현행기준 (민간최종소비지출)	현행가중치 (수도권, 광역시, 도)	3순위 (5.29점)	3순위 (6점)
2안	현행기준 (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배제	9순위 (3.33점)	6순위 (4점)
3안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소비지수 규모	5순위 (4.92점)	5순위 (5점)
4안	현행기준 (민간최종소비지출)	재정력	6순위 (4.54점)	-
5안	인구규모	현행가중치 (수도권, 광역시, 도)	2순위 (5.96점)	3순위 (6점)
6안	인구규모	가중치 배제	4순위 (5.21점)	2순위 (10점)
7안	인구규모	소비지수 규모	1순위 (6.29점)	1순위 (13점)
8안	인구규모	재정력 기준	4순위 (5.21점)	8순위 (1점)
9안	자체세입규모	현행가중치 (수도권, 광역시, 도)	7순위 (4.21점)	7순위 (2점)
10안	자체세입규모	가중치 배제	11순위 (3.08점)	-
11안	자체세입규모	소비지수 규모	10순위 (3.13점)	-
12안	자체세입규모	재정력	8순위 (3.42점)	-

제2절 정책적 제언

- 앞서 보여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보다 적합한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이 5가지 측면에서 배분기준 및 가중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시·도별 지방소비세 주요 안분체계를 도출하여 [그림 5-1]에 정리하였음

가중치		배분기준
소비지수 규모	1안	인구규모
가중치 배제	2안	인구규모
현행 가중치	3안	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방식)
현행 가중치	4안	인구규모
소비지수 규모	5안	민간최종소비지출(현행방식)

[그림 5-1] 안분체계 도출 종합결과

□ [제 1안]: 소비지수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 적용하여 인구규모를 최우선으로 한 배분기준 선택

- 현행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별 재정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제활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식의 하나임
-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한 가중치 적용 시 배분기준으로 인구규모를 차선택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자체세입규모 고려함
 - 인구규모와 자체세입규모의 상관관계는 0.99로 배분기준으로서 큰 차이는 없으나 재정불평등도 완화 측면에서 인구규모가 보다 적합할 수 있으며, 배분기준을 인구규모로 정하는 학계(김대영, 2005)의 주장이 제기되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배분기준으로 할 경우 소비지의 성격을 반영하되 동시에 소비지수를 근거로 지역별 가중치를 주게 되어 세종시의 지방세입의 왜곡방지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이러한 결과는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세입의 확충에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대전, 충북을 중심으로 충청권의 세수규모가 현행가중치 적용에 비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상생차원으로 봤을 때에도 긍정적임

□ [제 2안]: 가중치를 배제하고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 고려

- 가중치 배제 시에 세종시의 세입효과(효율성 측면)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이 높은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시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서 지역 간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기에 지방소비세 구조에서 일정부분 균형재정 장치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가중치가 배제되었을 시,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과 함께 기존의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형평화 기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 3안]: 현행 방식(현행의 가중치와 배분기준) 유지

- 현행 가중치 적용 방식은 그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력과 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고,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한 배분기준 역시 지방소비세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비수준(규모)의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을 유지할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됨
- 그리고 세종시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액, 토착산업 매출액에 비해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인구규모, 자체세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보다 불평등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즉, 자체수입의 경우 0.268로 형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세수의 집중도가 경상권에 집중되는 등 세수의 역전현상이 발생(인구규모도 동일)해 세수 배분의 왜곡의 여지가 있음

□ [제 4안]: 현행 가중치 적용과 인구규모에 따른 배분기준 고려

- 현행 가중치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와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됨
 - 즉,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근거한 안분은 소비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소비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소비보다는 소득에 더 밀접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배분의 기준을 인구규모로 정하여 배분할 시 불평등도가 다른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수의 안분에 대한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논의됨

□ [제 5안]: 소비지수 규모에 따른 가중치 적용과 민간최종소비지출 따른 배분기준 고려

- 단순하게 부여되는 현행 가중치에 대한 불합리성을 방지하고, 소비규모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지방세목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즉, 현행 민간 최종소비지수를 소비지수 규모로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면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기존의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근거로 시·도별 지방소비세를 안분하되, 가중치 역시 소비지수 규모에 근거해 보다 합리적인 세원 배분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논의됨

□ 추가 논의: 지방소비세의 독립세화 고려¹⁾

-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배분하는 현행 구조는 세수에 대해 지역 간 안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쟁점화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 광채기(2008)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의 세원이양의 방식을 설계할 때 부가세방식은 타당하지 않음과 독립세화 논의를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소비세의 세수분여방식, 공동과세방식을 그 기본으로 하되 생산지에 입각해서 독립세 방식을 가미한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1) 지역상생발전기금 강화(혹은 미리 선납하는 방식 고려),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도 함께 제기됨

참고문헌

- 곽채기(2000), “세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배분”.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2008),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5호, 34-65.
- 구정모 외(2000),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수평적 재정불균형〉, 강원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경수(2009),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김대영(2003),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대영(2005),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9권 제4호. 79-104.
- 김대영(2012),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제14권 제1호. 41~70.
- 김대영(2013), 〈지방소비세 확대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동욱(2009),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및 문제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김재훈(2012), “지방소비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배분산식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6권 3호. 1-29.
- 김정완(2010), “지방소비세의 위상 재정립과 새로운 배분기준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3~163.
- 김정훈(1996), 〈지방소비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제2판〉, 삼영사.
- 김종순·홍근석·장경원(2011), 〈지방소비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김현아(2003),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흥주(2018a). 지방의 여건을 반영한 바람직한 재정분권 강화 방향.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자료
- 김흥주(2018b).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분권 강화 방향. 세종인사이트 제3권
- 김흥주·강인호(201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가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미치는 영

- 향: 분권교부세 폐지 전·후 비교”.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3권 제2호. 89~122
- 김흥주·황광선(201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간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제31권 제2호. 45~80
- 남창우·구정모(2005),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보〉 제18권 제3호. 49~71.
- 노근호(200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77~116.
- 라휘문(2005),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2호. 217-238.
- 문병근(2010), “지방소비세의 세원배분과 재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보〉 제12권 제2호. 131~158.
- 박지현·안정서(2016),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 박충훈(1997), “재정분권화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인명(201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대한 연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의 교환 방안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1권 제3호. 35~60.
- 손희준(2008),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자원배분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2호. 157~185.
- 오연천(2000),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13.
- 유태현(2009),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4권 제2호. 25~64.
- 유태현·한재명(2014), “지방소비세 확충 및 불합리한 세수배분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3호. 1~30.
- 유태현(2017), 지방소비세의 발전방안. 지방세포럼 통권 제34호
- 이규배(2016),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주(2001), “지방소비세의 자치단체별 배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77~97.
- 이삼주(2003), 〈지방소비세도입의 정책과제〉, 지방소비세.
- 이상범(2010),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

고서.

- 이상훈·김진하(2011), <지방소비세제 개선방안-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상훈·김진하(2013),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평가와 대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 이영환·황진영·신영임(2009),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보고서.
- 이영희(2001),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61호. 19~32.
- 이재은(2006), “지방분권형 재정체계에 적합한 지방세제 개혁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제11권 제2호. 33~67.
- 임성일(2012),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지방세로서의 위상 정립 모색”.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7권 제1호. 1-40.
- 정재근(2012), “지방소비세 확대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찰”. <공공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99~118.
- 정지선·권오현·이기욱(2013), “지방소비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3권 제1호. 127~154.
- 주만수·임성일(2006), “응의성에 따른 지방소비세 재원배분과 소비지표”. <한국지방재정학회보> 제11권 제1호. 39~70.
- 주만수(2012), “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385~412.
- 최길수(2010), <지방소비세·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최길수·설영훈(2011),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역간 세수추이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237~256.
- 최병호(2010), “지방소비세 도입의 재원배분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149~182.
- Bird(1999), “Rethinking Subnational Taxes: A New Look at Tax Assignment,” *IMF Working Paper*, vol.165 no.9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Bird(2011), “Subnational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Economics and Policy*, vol.2 no.1, World Scientific Publishing, 139~161.

McLure & Martinez-Vazquez(2002), *The Assignment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World Bank.

Martinez-Vazquez(2006), "Revenue Assignment in the Practi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 State University.

Oates(199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Tax Journal*, vol. 46. no. 5. 236-43.

Oates(1996), "Taxation in Federal System: The Tax Assignment Problem", University of Maryland, Department of Economics.

Tiebout(1956), Charles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64 no.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6-424.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세통계연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실 내부자료.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2018.4.30.), 대통령령 제28841호.

<지방세법>(개정2017.12.30.), 법률 제15335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7년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부록

ID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지방소비세의 세입 효과 및 지역별 안분 체계」 연구의 일환으로 “소비세의 배분기준과 가중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입니다.

본 설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응답은 향후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마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결과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주 관 기 관 : 대전세종연구원

연구 책임 : 대전세종 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

※본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042-530-3537

이메일: myutos78@dsi.re.kr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문의 배경 지식

※ 현행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11%에서 향후 21%까지 확대시킨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배분기준과 가중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 현행 지방소비세액의 배분방식(5%분) 참고로 나머지 6%분은 취득세 보전분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님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안분액) =

$$\text{지방소비세과세표준} \cdot 5\%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가중치}_i}{\sum_i (\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_i \times \text{가중치}_i)}$$

- 시도별 소비비중(가중치: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매년 1월 1일 발표한 민간최중소비지출
- 여기서 i 는 광역자치단체를 의미

※ 소비지수: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 및 발표하는 민간최중소비지출(매년1월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지수를 말함(「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문 1) 현행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으로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의 규모에 따라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를 통한 배분방식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 ② 적절하지 않다

문 2) 위 문항에서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3)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다른 대안과 이유(간략하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구규모
- ② 자체세입규모
- ③ 부가가치세매출액
- ④ 기타의견(_____)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 가중치

문 4) 향후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수도권·광역시·도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는 현행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문 2로 이동)
- ② 적절하지 않다(문 3으로 이동)

문 5) 위 문항에서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6) 현행 가중치 부여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 및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 ② 민간최종소비지출(소비지수)
- ③ 재정력 기준
- ④ 기타의견(_____)

문 6-1)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대안 간 비교

문 7)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에 있어 다음 주요 대안을 합목적성, 형평성, 실행가능성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해 주십시오.

1안)

배분기준	가중치
민간최종소비지출	현행수도권 광역시, 도 기준

평가 기준	1안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2안)

배분기준	가중치
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배제

평가 기준	2안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3안)

배분기준	가중치
민간최종소비지출	민간최종소비지출

평가 기준	3안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4안)

배분기준	가중치
민간최종소비지출	재정력 기준

평가 기준	4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5안)

배분기준	가중치
인구규모	현행(수도권, 광역시, 도) 기준

평가 기준	5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6안)

배분기준	가중치
인구규모	가중치 배제

평가 기준	6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7안)

배분기준	가중치
인구규모	민간최종소비지출

평가 기준	7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8안)

배분기준	가중치
인구규모	재정력

평가 기준	8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9안)

배분기준	가중치
자체세입규모	현행(수도권, 광역시, 도) 기준

평가 기준	9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10안)

배분기준	가중치
자체세입규모	가중치 배제

평가 기준	10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11안)

배분기준	가중치
자체세입규모	민간최종소비지출

평가 기준	11안								
	←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12안)

배분기준	가중치
자체세입규모	재정력

평가 기준	12안								
	낮음←						→ 높음		
합목적성	1	2	3	4	5	6	7	8	9
지역 간 형평성	1	2	3	4	5	6	7	8	9
대안의 실행가능성	1	2	3	4	5	6	7	8	9

문 8) 문 7의 각각의 배분기준-가중치별로 바람직한 **우선순위 대안 세 가지**를 선택하여 가장 중요한 대안별로 1, 2, 3 순위로 나열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직업은? ① 교수 ② 실무공무원(기관유형: _____) ③ 연구원

DQ2) 귀하께서는 관련 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	--

개
월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